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운용실태 조사연구

Research Operating Condition of Landscape and Public Design System
in local Government.

2013

연구진

연구책임

● 정수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최주원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 2월 발효예정인 개정 경관법에 의해 인구 10만이상인 기초지자체에서도 수립의무화 된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원시 경관관련 행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도권 지역의 기초지자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관법이 개정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수립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각 시군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대상지역인 2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에서 경관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현황, 기본방향의 설정,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특정경관계획, 실행계획의 각 항목 별로 계획수립내용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등 일부 계획항목과 실행계획 부분에서의 편차를 제외하고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디자인계획의 경우에는 16개 시·군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 경관가이드라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유사한 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나, 마스터플랜, 표준디자인, 색채경관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조직의 운용실태,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제정현황,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전협의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운용실태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행정조직의 경우 10인 이상의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9개 지역이었다. 또한 24개 지역에서 경관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10개 지역

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사한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화성시 등 6개 지역이 조사되었다. 경관위원회는 14개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5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개 지역이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천시의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안양, 시흥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보다는 사전협의에 의한 경관행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역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4개 지역에서 경관협정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경관계획을 운용하기 위한 경관행정 추진에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었으며, 공공디자인 분야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기능을 우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경관행정 운용에 있어서 경관조례의 제정 및 위원회의 운영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전협의체를 통한 정교한 행정운용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은 초기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서 조사기간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미응답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경관관련 분야의 연구진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관련연구동향	15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기본개념	21
1. 경관	21
2. 공공디자인	22
3. 도시디자인과 도시설계	24
제2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25
1. 경관법	25
2. 관련 유사제도	26
3. 공공디자인관련 제도	28
제3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33
제1절 조사개요	33
1. 기본방향의 설정	33
2. 일반현황	34
제2절 경관계획	40

1. 수립현황	40
2. 내용	41
제3절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64
1. 수립현황	64
2.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	65
제4절 기타관련계획	78
1. 수립현황	78
2. 계획내용의 분석	79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운용실태 85

제1절 경관·공공디자인 운영조직	85
1. 분석의 틀	85
2. 시·군별 현황	86
제2절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96
1. 경관조례	96
2. 공공디자인 조례	121
3.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유사자치법규	132
제3절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140
1. 운영현황	140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141
3. 사전협의의 운용실태	155
제4절 경관사업	157
1. 정의	157
2. 관련법과 제도	158
3. 현황	162
제5절 경관협정	163
1. 정의	163
2. 관련법 및 제도	164

3. 운용실태현황	165
제5장 운영실태 분석 및 비교	169
제1절 경관행정 운용 일반사항	169
제2절 지자체 별 운용실태 비교	174
제3절 소결	177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83
제1절 결론	183
제2절 향후과제	186
참고문헌	191
영문요약	197

표 목 차

<표 1-1> 시·군 방문 및 전화인터뷰 조사일정	14
<표 1-2> 경관관련 선행연구 검토	16
<표 1-3> 선행연구 검토 - 공공디자인관련	18
<표 2-1> 개정 경관법의 주요내용	26
<표 2-2> 중복된 법률들의 주요내용	30
<표 3-1> 경기도 행정구역현황	35
<표 3-2> 경기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37
<표 3-3> 경관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41
<표 3-4> 경관법(2014)과 경관계획 수립지침(2012)에 따른 분석항목 설정 ..	42
<표 3-5> 시·군별 경관계획 현황조사 및 분석	44
<표 3-6> 시·군별 경관계획 기본구상	50
<표 3-7> 시·군별 경관계획 기본계획	56
<표 3-8> 시·군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특정경관계획의 내용	62
<표 3-9> 시·군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특정경관계획의 내용	63
<표 3-10>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66
<표 3-11> 성남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67
<표 3-12>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68
<표 3-13>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69
<표 3-14>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70
<표 3-15>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71
<표 3-16>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72
<표 3-17> 김포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73
<표 3-18> 군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74
<표 3-19>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75
<표 3-20>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의 주요내용 ..	76
<표 3-21>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7
<표 3-22> 안산시 기타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79

<표 3-23> 안양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80
<표 3-24> 구리시 기타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81
<표 3-25>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의 주요내용	82
<표 4-1> 시·군별 경관·공공디자인 운영조직	86
<표 4-2> 수원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97
<표 4-3> 성남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98
<표 4-4> 고양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99
<표 4-5> 용인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0
<표 4-6> 부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1
<표 4-7> 안산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2
<표 4-8> 안양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3
<표 4-9> 평택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4
<표 4-10> 의정부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5
<표 4-11> 파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6
<표 4-12> 광명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7
<표 4-13> 김포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8
<표 4-14> 군포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09
<표 4-15> 광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0
<표 4-16> 이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1
<표 4-17> 양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2
<표 4-18> 오산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3
<표 4-19> 안성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4
<표 4-20> 포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5
<표 4-21> 의왕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6
<표 4-22> 여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7
<표 4-23> 양평군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8
<표 4-24> 과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19
<표 4-25> 연천군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20
<표 4-26> 성남시 공공디자인조례	122
<표 4-27> 용인시 공공디자인조례	123

<표 4-28>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124
<표 4-29>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125
<표 4-30> 오산시 공공디자인조례	126
<표 4-31> 양평군 공공디자인조례	127
<표 4-32>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	128
<표 4-33> 과천시 공공디자인조례	129
<표 4-34> 가평군 공공디자인조례	130
<표 4-35>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	131
<표 4-36> 유사 자치법규 수립지역	132
<표 4-37>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조례	133
<표 4-38> 시흥시 경관디자인조례	134
<표 4-39>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135
<표 4-40> 김포시 공공디자인 규정	136
<표 4-41>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137
<표 4-42>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138
<표 4-43>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139
<표 4-44> 성남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141
<표 4-45> 용인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142
<표 4-46> 의정부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143
<표 4-47> 경관위원회 운영	144
<표 4-48> 화성시·연천군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150
<표 4-49> 구리시 경관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151
<표 4-50> 과천시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152
<표 4-51> 시흥시·안양시 경관소위원회 운영	153
<표 4-52>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및 심의 현황	155
<표 4-53> 경관법의 경관사업	158
<표 4-54>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사업현황	162
<표 4-55> 경관법 상의 경관협정	164
<표 4-56> 시·군별 경관협정 현황	165
<표 5-1> 경관관련 행정운용실태 비교	17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방법	13
<그림 3-1>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도	34
<그림 3-2> 경기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도	36
<그림 3-3> 경기도 녹지자원분포도	38
<그림 3-4> 경기도 녹지자원 우세지역	38
<그림 3-5> 경기도 농경지자원분포도	39
<그림 3-6> 경기도 농경지자원 우세지역	39
<그림 3-7> 경기도 시가화 분포도	39
<그림 3-8> 경기도 시가지자원 우세지역	39
<그림 3-9> 경관계획 수립지역	40
<그림 3-10>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지역	64
<그림 3-11> 기타관련계획 수립지역	78
<그림 4-1> 경관조례 수립 지역	96
<그림 4-2> 공공디자인 조례 수립지역	121
<그림 4-3>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지역	14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관련연구동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관련 제도의 변화

2007년 11월 도시경관에 관한 기본법인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본격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활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지며,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여 제도적 구속력이 떨어졌다.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각 개별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사이에서 모순된 점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위임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경관법은 이러한 내부적 모순점들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경관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국토전체를 포괄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자체만 수립하던 경관계획을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현재 경관위원회 심의지침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행정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의한 다양한 수준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연구로써, 현재까지 수립된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과 관련 계획, 가이드라인 등의 계획들과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사항, 경관사업 및 협정 운영사항 등 경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향후 경관법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각 단계별 지침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수원시 경관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경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연구가 될 것이다.

2) 경관과 공공디자인 행정의 유사성

각 지자체에서 경관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다루는 업무로는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업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분야는 이미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을 시작으로 1991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일련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표준디자인을 시작으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통합지주안내판과 같은 사업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신속하고 빠른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 인접한 인천과 경기도, 부산, 대구, 울산과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부터 부평, 아산 등 기초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1년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의 보유비율은 광역지자체는 93.8%, 기초지자체는 45.6%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각종 사업수행 시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관련법이 없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관련 법의 입법 단계에서의 지적사항을 검토해보면, 주로 산업디자인 기본법, 경관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등과의 유사성이나 다루는 대상의 동일성, 법령의 위계, 관련 부처의 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에서 제시되는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 부문에서의 가이드라인이 공공공간, 가로시설물, 색채, 조명 등의 분야에서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에서도 경관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부서 내에서 담당자만 다른 경우가 많고, 실제 사업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학술적으로도 공공디자인의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도 경관법적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¹⁾.

그 외에도 수변경관계획, 환경색채계획, 역사경관계획 등의 특정경관계획이나, 옹벽, 인공벽면 등 특정시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가이드라인들이 수립되고 있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분야의 행정적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향후 경관과 공공디자인 각각의 분야에서 발전적 관계를 논하는 기초를 만들고자 했다.

3)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현황자료 부재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개정 경관법으로 인해 인구1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수행해야하는 경관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계획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수립주체별 특성이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담고 있는 백화점식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백

1) 최성호(201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에 던진 5가지 질문, 2011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화점식 계획이 수립되는 이유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항목을 모두 담아주기를 원하는 공공의 입장, 그리고 타 지역의 경관계획을 베끼는 행태, 경관계획에 대한 몰이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앞으로 수립하게 될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이 지자체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행정적 실행력을 갖춘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관 및 관련 분야의 제도 운용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모두 13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8건(2010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인 경기도지역에서는 31개 시·군중에 16개 시·군이 이미 수립완료 했고, 5개 시·군의 계획이 수립중지 중에 있으며, 개정 경관법 시행에 따라 추가로 6개 지역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는 수원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들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행정수요를 확인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원시의 경관행정이 향후 타 기초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2. 연구의 목적

1) 수원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수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이자, 경기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곳이다. 수원시의 경관행정력은 수차례 경관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수원시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인접지역인 경기도 내의 타 지역의 계획, 행정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그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타 지자체와 같이 사용하거나, 협의에 의해 조정해야한다. 기초나 광역지자체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도로나 공원과 같은 편익시설

의 관리, 폐차장, 매장시설의 설치와 같은 경우 인접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행정은 그 도시 행정의 질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 환경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그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교감하고 향후 나아갈 미래상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관, 공공디자인 시설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설물은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인데, 타 지역과 경계지역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와 인접한 경기도 남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지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원시의 경관 및 도시디자인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 행정시스템 정립을 위한 실태파악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는 기본 개념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국토공간을 다루는 분야 중에서 미적인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경관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가로경관, 건물 미관, 색채환경, 야간조명과 같은 대상들은 공공디자인에서 다루는 공공건축에서의 외관,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로환경, 공공시설물 중에 가로등과 같이 다루는 대상이 상당히 중첩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관법에서 다루는 경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다. 경관법 제13조에는 경관사업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경관 도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가로환경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가로환경의 정비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 역시 경관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분야의 유사성으로 인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위계와 영역이 정해지지 않아 많은 부분 혼선을 빚고 있다. 각종 협의 및 심의절차,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디자인 분야는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현장 수요가 많아 폭발적으로 발전해왔다. 게다가 공공디자인은 행정서비스, 지역 컨설팅,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어 이러한 유사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두 분야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한계, 또는 학문적 지형을 논하기 보다는 실제로 행정 부분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경관계획 및 경관행정의 운용실태를 통한 개선방향과 공공디자인 영역의 변천과정을 보다 심도 깊게 조사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이 두 분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제시

2014년 2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경관법에 의해 변화하는 제도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지자체의 경관행정 운용실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경관계획수립지침, 표준조례안 등을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존 경관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각 지자체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千篇일률적인 계획수립,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못한 가이드라인, 타 지자체에서 수립한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형식적인 내용, 백화점식으로 많은 것을 담아낼 뿐 전략이 없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계획을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 경관법에서는 각 지자체별 특성을 담은 계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

을 설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4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정비, 색채·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등의 경관 및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 외에도 기본경관계획을 법정화하기 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러한 개정 경관법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기초지자체 행정 일선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이 실제로 국토공간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그 외의 관련 계획들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경관 및 관련 행정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수원시는 현재 인구 117만으로 전국 137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규모를 가진 광역급 기초지자체이다. 또한 오산, 화성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으로는 불리한 여건에도 우수한 행정력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원시의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 지역의 31개 시·군으로 한정했다.

경기도에는 수원 외에도 성남,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3곳이 있다. 창원을 제외한 가장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밀집해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수요와 그 대응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에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 및 면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초지자체가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집중되어 있어 시범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기도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서울, 인천과는 다르게 주변 도시들과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수원과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쓰레기매립장, 송전탑 등 경관에 불리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세대 신도시, 판교, 파주 교하, 수원 광교, 오산 세교와 같은 2세대 신도시를 비롯하여 용인 수지, 구갈 등 베드타운(bed town)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결과적으로 경관법 제정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에서 디자인추진본부를 설치한 이후 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앞선 정책을 펼친 지역이기에 연구대상으로 가치가 높다.

시간적으로는 경관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경기도 내 일부지역에서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2년경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경관계획 혹은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경관법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을 우선적으로 다뤘으며, 경관계획과 다양한 부분에서 유사성이 강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색채계획, 표준디자인 계획 등 관련 계획을 내용적 범위에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외에도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침에 의한 계획의 세부항목 내용을 비교하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실태, 관련 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경관법에 의해서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을 행정적으로 발효시키는 경관조례, 심의기구로서의 경관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경관사업, 경관협정의 수립 및 추진현황, 경관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건수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했다. 또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과 업무 등도 조사에 포함했다.

공공디자인 부분도 내용적 범위에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는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 일선 행정에서는 이 두 가지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행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자료수집을 병행해서 실시했다.

공공디자인 부분은 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에 있어 경관색채, 가로시설물, 야간조명과 같은 부분을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발굴의 측면에서 관련 내용들을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설치, 사업추진 여부도 같이 조사했다.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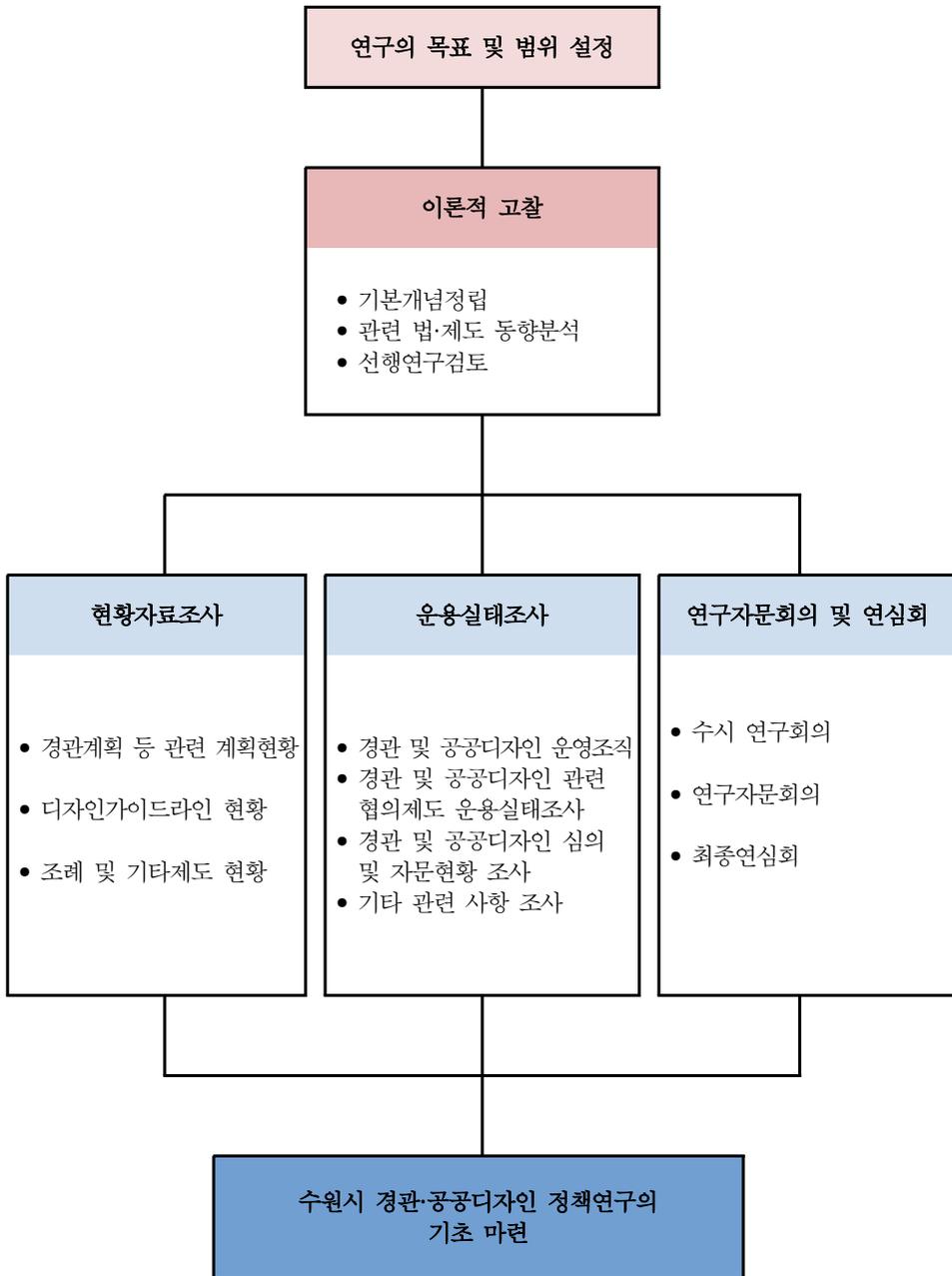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및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실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은 해당 고시내용 및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기초로 정리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각 시·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유선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관련 계획의 수립여부, 사전협의 등 각종 협의 추진여부, 위원회 수립 및 운영사항,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1. 참고)

또한 조사내용이 향후 어느 정도 행정적인 실행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계획항목이 경관계획의 진행 및 수립 여부를 파악했으며, 경관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수립된 16개 시·군 가운데 최근에 수립한 안성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경관계획을 살펴보았다.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자료 협조된 12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내용을 분석했으며, 그 외 색채 및 시설물에 관련된 계획들을 추가로 검토했다.

각 계획들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제도의 설치 및 운영현황,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현황 및 심의 건수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자치법규의 수립여부, 자체 경관사업의 추진건수, 경관협정 체결사항 등을 조사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항목에 포함 시킨 이유는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적인 경관 행정의 축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관 관련 부서의 설치현황 및 소속부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각 기초지자체가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인원수, 조직구성, 세부업무분장 등에 따라 경관 등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방법

〈표 1-1〉 시·군 방문 및 전화인터뷰 조사일정

일정	지역	담당부서	비고
2013. 9. 30. 월	과천시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2013. 10. 7. 월	과천시 안양시 안산시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3. 10. 8. 화	가평군 광명시	미래창조 정책실 도시환경국 도시정책과	
2013. 10.10. 목	광주시 하남시	주택과 경관디자인팀 도시과 도시미관팀	
2013. 10. 11. 금	구리시 남양주시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팀	
2013. 10. 14. 월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팀	
2013. 10. 15. 화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건축과 공공디자인팀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2013. 10.16. 수	성남시 양평군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행복도시과 도시경관팀	
2013. 10. 18. 금	군포시 시흥시	문화공보과 김윤선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2013. 10. 21. 월	의정부시 양주시	미래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신도시창조과 도시디자인팀	
2013. 10. 22. 화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개발국 건축디자인과	
2013. 10. 23. 수	고양시 파주시	뉴타운사업과 경관디자인팀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	
2013. 10. 24. 목	김포시 부천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2013. 10. 25. 금	수원시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	
2013. 10. 29. 월	안성시	안성시 도시개발과	
2013. 10. 30. 화	이천시 포천시	건축과 도시경관팀 도시주택과 도시미관팀	
2013. 10. 31. 목	동두천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제3절 관련연구동향

경관에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7년도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 경관의 질 저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경관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경관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근거로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7년 이후의 경관관련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시책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 또는 분야별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 그리고 경관위원회 운영 등 경관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표 1-2.>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관계획수립 및 관련지침 간의 정합성 여부, 경관조례의 수립여부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수립한 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의 경관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기존의 경관법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출간된 경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중심으로 경관행정 개선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상욱 외(2010)의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관행정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대체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강화, 조례의 설치 및 기능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위임과 행정조직의 특성에 대한 파악없이 단편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초자료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표 1-2〉 경관관련 선행연구 검토

유형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경관 계획	주신하 김영희	국내 경관계획 관련지 침 및 계획내용 분석, 2011.8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과 문제 점 도출하여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 획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안
	주신하 김영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 획 수립현황, 2010	전국을 대상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 획의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의 현 상태진단,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문지원	경관법·제도에 기초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계 획 보완방향에 관한 연 구, 2009.	2002년 작성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 본계획의 내용을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 지침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내용의 보완사항과 방 향 제시
	김희재 오성웅 류중석 배용규	경관기본계획의 구성내용 별 국내사례 특성분석 연 구, 2008	경관법 제정 이전의 비교적 최근에 작성 된 지자체(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 법의 경관계획수립지침과 비교하여 문제 점을 도출하고 경관기본계획의 방향 제 시
	이정형 이여경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 황과 특성을 고려한 경 관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경관법의 큰 틀인 경관계획의 수립 측 면, 경관사업 시행 측면, 경관협정 체결 의 측면, 경관위원회 설치의 측면으로 나누어 지자체별 경관시책의 적용방안을 제시함
경관 행정	나한주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 경관 행정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2008.	경관법의 제정으로 법적인 타당성을 얻 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고 보다 적 극적인 경관 규제적 성격의 경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이여경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 황 및 특성에 관한 연 구, 2007.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53개의 시급 기 초자치단체의 경관시책의 현황실태 조 사·분석 경관법 적용방안 및 지자체 경관시책의 바람직한 전개방향 제안

유형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경관 행정	박상현 (강원발전 연구원)	강원도형 경관모델구축	도 및 시·군 경관 요소별 우수사례 수집 및 정리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경관 시책정리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디자인 강원 시책과 연계 모색
	한상욱 외 (충남발전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경 관관리 제도 및 운 영개선 방안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 설문조 사내용을 기반으로 경관제도 운영개선방 안 제시 조례 및 통합조직설치에 대해 제시
	이성룡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도 경관관리 구축방안	경기도의 경관계획 및 경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선정에 대 한 개선방향 제시 등 일부 행정관련 내 용 포함
	이형복 (대전발전 연구원)	대전광역시 경관행 정 역량강화 방안	효과적인 경관행정을 위한 역량강화방안 모색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 회에 대한 내용 고찰 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 경관행정 현황 조사

(앞의 표 계속)

디자인 행정에 관한 정책연구는 2007년 이후에 산업자원부의 ‘지자체 디자인 행정 매뉴얼’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산업 가이드라인’등에서 지자체의 행정조직을 구상을 포함하는 디자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공디자인의 지역 보급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 및 지역 이미지 만들기를 넘어선 도시 마케팅이나 문화와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디자인 조직 구상에 따르면 디자인 담당 부서의 위상과 부서인력의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 지원, 관련계획 수립, 디자인지도 및 교육 등과 같은 부서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에서도 광역 지자체 업무의 연계를 위해 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통일된 기준을 시·군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자체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TF형 조직, 실무형 팀 조직, 민관통합형 본부조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관련 조직의 기능 및 구성방향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의 디자인 행정조직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계획내용의 분석, 개선방향의 제시, 조직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표 1-3〉 선행연구 검토 - 공공디자인관련

유형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공공 디자인 행정	권영현 이상준 이정수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행정조직 특성 및 구성방향연구, 2011.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조직된 디자인 관련부서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건축, 옥외공간 등을 다루는 부서의 성격 및 규모 특성 분석
	문화 체육 관광부	공공디자인 사업 가이드라인, 2009.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도입시 조직구성, 관련제도 수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정경석 하창현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2008.	공공디자인 영역의 확장 필요성과 개별 시설물 보다 공간과의 조화가 우선시되는 디자인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올바른 이해와 정립 요구
	산업 자원부	지자체 디자인 행정 매뉴얼, 2007.	공공디자인 영역 뿐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걸친 행정조직 체계를 비롯하여 계획수립과 시행, 관련제도의 정비에 관한 국내외의 디자인 행정 사례를 담고 있음
	임만택	공공문화에서의 공공디자인, 2005.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기본개념

1. 경관

경관법에서는 경관(景觀, landscape)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관은 어느 특정한 구역의 환경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특성을 비롯해 자연, 생태계, 사회, 생활환경 등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임승빈(1991)²⁾에 의하면 경관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풍경, 2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이는 풍경의 물리적 구성과 경관 형성에 관련된 자연 생태계의 역할, 인간 활동의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관은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도시경관(cityscape, townscape)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현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경관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순간에서부터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떠올릴 때 발생하는 이미지까지 포함한다. 이로 인해 경관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며, 이런 경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경관은 해석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의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경관은 결국 어떤 주체에 의해 관찰되고 보이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관의 의미가 점차 시지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까지 포함한 복합적 감각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관의 어휘가 변천한 경과를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시각적 측면을 위주로 하

2)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2

여 생태적인 측면과 토지공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경관의 사용빈도가 많아지는 최근으로 올수록 경관의 의미는 지역문화, 특정지역의 분위기, 이미지,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관을 시각적, 문화적 차원으로 좁혀서 볼 때도 경관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즉, 경관은 산이나 바다 그 자체와 같이 저 혼자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 그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주체로서의 사람의 보는 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경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활동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호 작용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의 질적인 수준을 논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과 도시를 다루는 분야들 중 가장 평가와 판단이 어려운 미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의 기본개념은 공공장소의 여러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공공디자인의 일반적 정의는 공공장소의 여러 가지 장치들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산업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나 매체, 가로시설물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을 말한다. 즉, 공공디자인이란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안에서 국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문화부(2008)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로 정의 하였으며, 서울시(2008)⁴⁾는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 공간, 도

3) 공공디자인 매뉴얼(2007),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발췌정리

4)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시 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이나 사업, 행위와 그 결과물⁵⁾”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체별로 공공디자인을 각각 행위, 계획, 사업이나 그 결과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공디자인은 해당하는 행위를 추진하고자 하는 곳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통된 개념을 정리해보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단체의 디자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디자인 활동을 포함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디자인 초점을 맞추고 개인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디자인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성격은 결국 도시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면에서는 경관법이 다루는 대상과 중복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그 대상을 구체적인 디자인 행위로 국한하고 있어 경관법에서 다루는 제 분야 영역이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비해 좁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그 개념의 범위를 넓혀 공공부문의 서비스 디자인까지 확장하여 단순히 대상의 디자인이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이나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나 상호교류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전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5)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 2조

3. 도시디자인과 도시설계

서울시(2006)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언급한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의 정의는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해 도시시설물의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디자인의 개념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에 비해 그 대상을 도시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설계(urban design)은 도시계획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디자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 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의 중간 단계 수준의 도시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도시설계는 도시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공간적 상관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도시설계는 서로 다른 분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공디자인과 사적 영역의 환경디자인 일부분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에서의 디자인 실천수단으로서의 도시설계는 그 규모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들어 지구단위계획이 기계적으로 재생산됨에 따라 이러한 취지와 역할에 대한 부분이 퇴색되어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야이다.

도시의 공간과 그 공간에 속한 장치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도시설계는 상호 중첩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천주체의 주요 수단이 시각의 감각적 차원에서의 제어, 산업디자인과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디자인행위, 혹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의 제도적 개입 중에 어떠한 것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각 영역간의 개념적 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1. 경관법

2007년 5월,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와 지방정부의 경관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원과 유도 위주의 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및 경관형성 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부처별 개별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관관리의 혼선으로 인하여 실행력 미비하고, 자치단체별 경관관련 유사사업(디자인사업)의 중복시행과 연계성 미흡, 경관법 취지와 운영목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렇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전부개정안을 2013년 8월 6일 공포했으며, 오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경관법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 시·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과 의무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각종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며,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받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수 경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필요시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 개정 경관법의 주요내용

정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우수경관자원 보호 - 우수경관 창출을 위한 유도 및 지원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시·군 포함) -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적 전략과 기본방향 설정 - 경관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시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자체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수립 - 시·군 경관계획은 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
경관심의제도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SOC), 개발사업, 건축물 등 - 각 사업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우수한 경관 발굴 및 포상 지원 - 3차원의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2. 관련 유사제도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7년 8월 전문이 개정되었다. 1999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4차례 부분 개정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멸종위기 야

생동·식물 등의 포획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경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건축기본법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기본이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이 이루는 공간과 공공공간과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환경과 건축을 그 대상으로 하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기본법의 의한 행정력은 단순히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정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의 건축행정의로의 발전을 꾀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기본계획의 법적인 위

계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심의 및 사전협의 단계가 불명확하여 실천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공공디자인관련 제도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법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현황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국회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분야가 중복 또는 충돌된다는 점⁶⁾, 공공디자인의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근거 부족⁷⁾ 등을 근거로 무산되어 업무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 이관되게 되었다. 행안부는 법규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요소들을 통합하는 개선 체계에 대해서 구상하고 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추진한 바 있으나 총리실 주재 정책협의 결과 삭제되었다. 그 사유는 선진국의 입법 사례가 전무하고, 기본법 제정에 대한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⁸⁾. 이렇게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공공디자인 관련 법안이 새롭게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공공디자인이 다루고 있는 분야와 중복되는 분야를 다루는 관련 법규들은 국토경관관리의 틀을 제공하는 경관법, 건축물외부벽면을 다루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외에도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공간환경, 공공공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사적 영역의 용도를 정의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산업디자인 초점,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고자 하며,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법’에서는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도입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기부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

6)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7)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7) 국회문화관광위원회(2007)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8) 행정안전부(2010) 공공디자인 역할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p.76

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법안들은 공공디자인이 주목하는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이나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여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관련법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의 행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가지는 편리성에 주목하여 관련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해 공공디자인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 등 다양한 관련 조례를 지정하여 공공디자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자치법규를 입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조례에서 위임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2013. 11. 11공포)’를 비롯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등 디자인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관련한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책이 각 기초지자체의 제도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운용실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2-2〉 중복된 법률들의 주요내용

법 률	목적 및 정의	비 고
디자인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디자인/ 등록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실시 	권리보호
산업디자인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초점
문화예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공연, 전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함을 규정 	공공시설 1%예술작품 규정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 ·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포괄적 규정
건축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조성 · 건축물/공간환경/공공공간/건축디자인/품격/품질/건축 	공공공간 건축디자인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 제한된 범위

제3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경관계획

제3절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4절 기타관련계획

제3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제1절 조사개요

1. 기본방향의 설정

1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 경관협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관법 체계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하는 권한에 따라 각 사업들의 추진절차에 따른 사전협의 및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제안하는 협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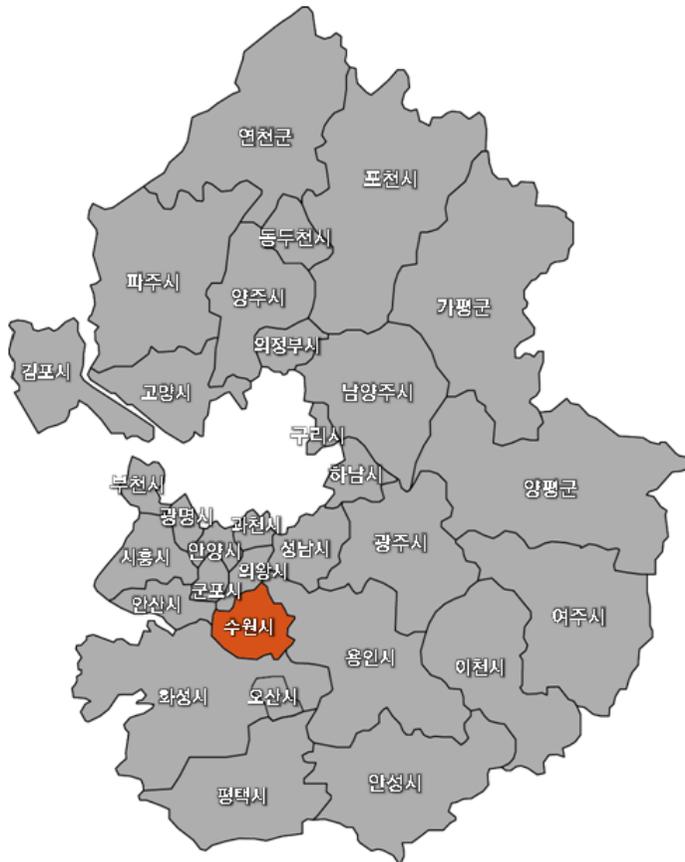
개정 경관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및 운영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으로 경관계획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경관조례의 제정여부와 그 내용, 경관위원회의 설치현황, 심의 안건 수, 사전협의건수를 포함하여 조사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색채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여부, 조례제정현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기본항목으로는 지자체의 인구수, 밀도, 면적 등 기본현황을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분포, 공공디자인 수립지역의 분포 등을 배치함으로써 전반적인 계획수립현황이나 운영 실태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조사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현황을 각 시·군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습득하고, 각 시·군별 담당자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직접 인터뷰를 거부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불응답으로 처리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업무과약 등이 미숙한 경우가 있어 경관사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누락되었으나, 우선은 기초자료 취합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맞춰 정리하여 포함하였다.

2. 일반현황

1) 행정구역

수원시는 경기도청 소재지이며, 경기남부권역의 중심도시이다. 이에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의 행정구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는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지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행정구역으로는 27시 4군 32읍 109면 406동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 9월 23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28시 3군 32읍 109면 406동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3-1〉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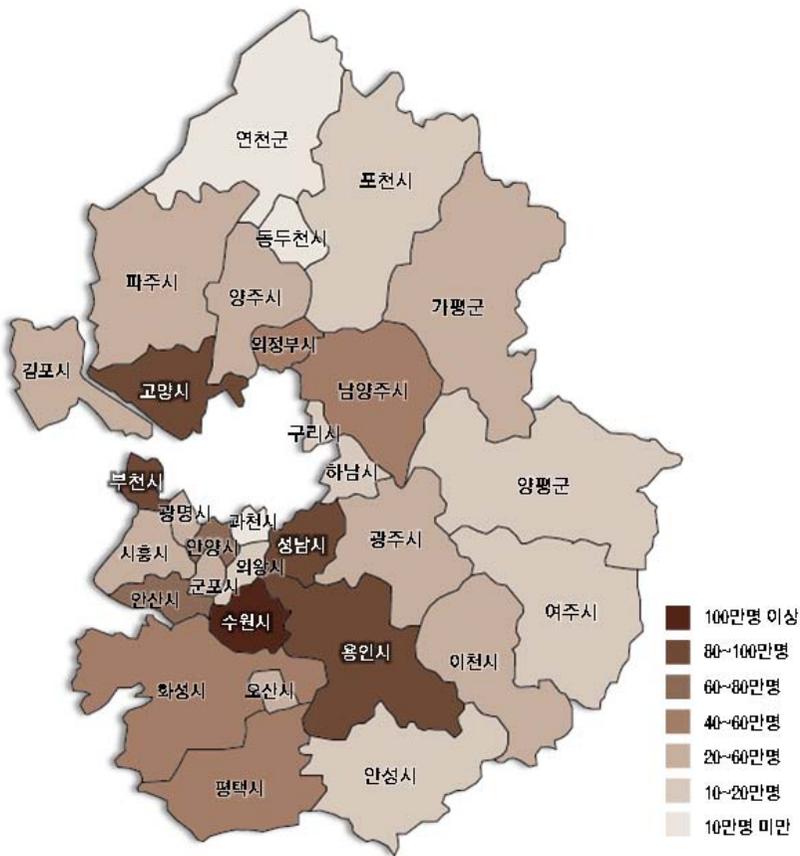
〈표 3-1〉 경기도 행정구역현황

구·군별	구분	면적 (km ²)	행정구역			
			구	읍	면	동
	경기도	10,170.91	20	32	109	406
	수원시	121.02	4			40
	성남시	141.66	3			48
	고양시	267.41	3			39
	용인시	591.37	3	1	6	24
	부천시	53.44	3			36
	안산시	149.06	2			25
	안양시	58.46	2			31
	남양주시	457.97		5	4	7
	화성시	689.58		3	10	10
	평택시	457.47		3	6	13
	의정부시	81.54				15
	시흥시	135.03				15
	파주시	672.66		4	9	7
	광명시	38.52				18
	김포시	276.64		3	3	5
	군포시	36.46				11
	광주시	430.99		3	4	3
	이천시	461.30		2	8	4
	양주시	310.31		1	4	6
	오산시	42.77				6
	구리시	33.31				8
	안성시	553.44		1	11	3
	포천시	826.58		1	11	2
	의왕시	54.01				6
	하남시	93.04				10
	여주시	608.00		1	9	
	양평군	877.80		1	11	
	동두천시	95.66				8
	과천시	35.86				6
	가평군	843.60		1	5	
	연천군	675.95		2	8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안전행정부 2013.1.1. 기준)

2) 인구

경기도의 총 인구는 약1,243만명이며, 전체면적 10,171km²이다. 인구밀도는 평균 1km² 당 1,200명으로 전국평균 453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수원시는 인구 약 117만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시이며, 부천시는 인구밀도 16,671명/1km² 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개정된 경관법에 의해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인구 10만이상의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다.



〈그림 3-2〉 경기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도

〈표 3-2〉 경기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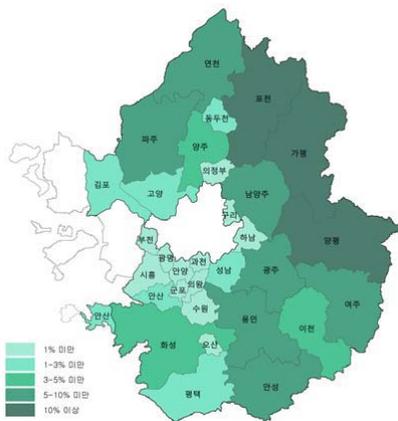
구·군별	구분	면적 (km ²)	인구 (명)	경기도 내 인구비율 (%)	인구밀도		
					2008	2009	2010
경기도		10,170.91	12,093,299	100.00	1,134	1,151	1,187
수원시		121.02	1,120,258	9.26	9,013	9,077	9,129
성남시		141.66	978,615	8.09	6,762	6,909	7,033
고양시		267.41	969,916	8.02	3,555	3,556	3,598
용인시		591.37	915,959	7.57	1,406	1,444	1,508
부천시		53.44	869,944	7.19	16,506	16,560	16,671
안산시		149.06	715,108	5.91	4,991	4,959	5,055
안양시		58.46	611,412	5.06	10,731	10,666	10,757
남양주시		457.97	599,539	4.96	1,116	1,159	1,244
화성시		689.58	525,490	4.35	685	747	772
평택시		457.47	434,305	3.59	918	925	948
의정부시		81.54	429,147	3.55	5,338	5,340	5,346
시흥시		135.03	399,485	3.30	3,033	3,065	3,119
파주시		672.66	394,201	3.26	475	493	541
광명시		38.52	355,560	2.94	8,163	8,264	9,042
김포시		276.64	287,432	2.38	838	859	906
군포시		36.46	286,841	2.37	7,768	7,723	8,066
광주시		430.99	275,656	2.28	566	575	602
이천시		461.30	204,917	1.69	434	436	449
양주시		310.31	200,310	1.66	603	611	659
오산시		42.77	200,291	1.66	3,594	3,823	4,368
구리시		33.31	192,341	1.59	5,929	5,920	5,941
안성시		553.44	181,608	1.50	317	320	334
포천시		826.58	157,559	1.30	204	204	205
의왕시		54.01	154,757	1.28	2,515	2,632	2,755
하남시		93.04	146,269	1.21	1,564	1,616	1,636
여주시		608.00	109,550	0.91	180	181	184
양평군		877.80	102,193	0.85	104	105	110
동두천시		95.66	97,175	0.80	974	1,001	1,028
파천시		35.86	71,068	0.59	1,947	2,018	2,024
가평군		843.60	60,794	0.50	69	69	71
연천군		675.95	45,599	0.38	66	66	68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안전행정부 2013.1.1. 기준), 경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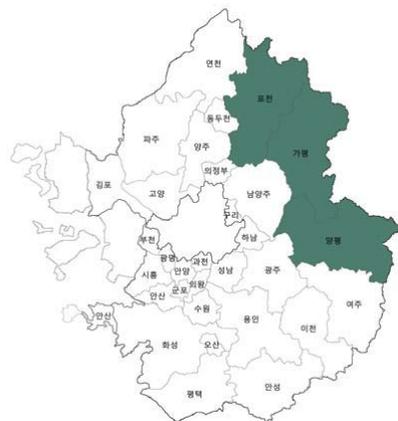
3) 경관자원현황

(1) 녹지 경관자원 현황

경기도 임야 전체면적 대비 각 시·군의 녹지(임야) 면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북동부를 중심으로 녹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내 임야 전체의 10% 이상의 녹지가 분포하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를 녹지자원이 지배적으로 경관자원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그림 3-3〉 경기도 녹지자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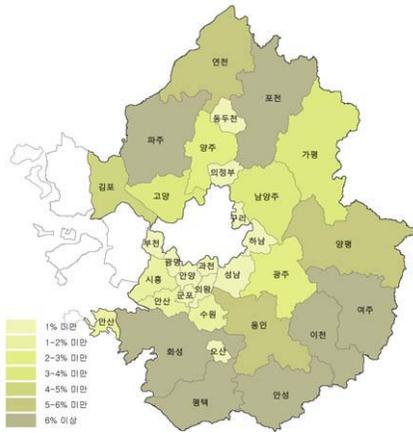
〈그림 3-4〉 경기도 녹지자원 우세지역

(2) 농경지 경관자원 현황

경기도 전·답 전체면적 대비 각 시·군의 농경지 면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농경지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이 6% 이상인 지역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를 농경지 자원이 지배적으로 경관자원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9) 경기도(2010), 경기도 경관계획, p.41 발췌 및 재정리

10) 앞의 책,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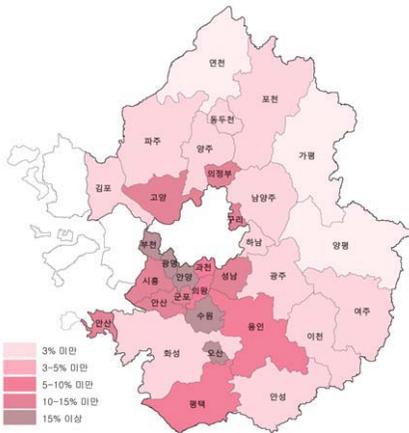
〈그림 3-5〉 경기도 농경지자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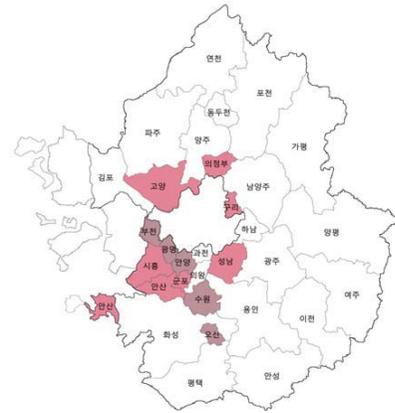
〈그림 3-6〉 경기도 농경지자원 우세지역

(3) 시가지 경관자원 현황

경기도의 시가지화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환상형 구조로 비율이 높은 지역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가지화 비율이 10%이상인 지역은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이다.¹¹⁾



〈그림 3-7〉 경기도 시가지화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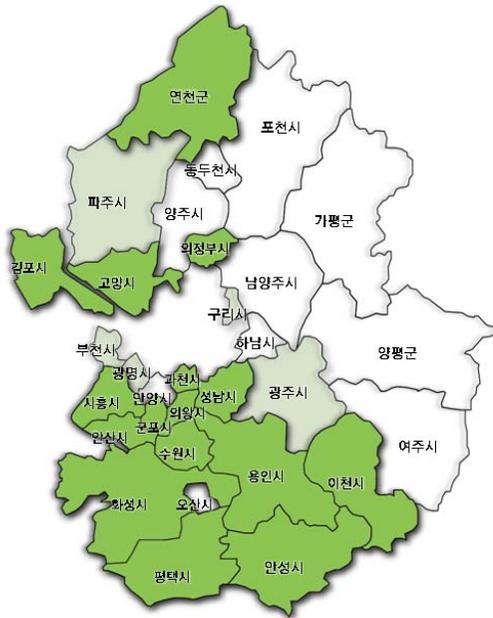
〈그림 3-8〉 경기도 시가지자원 우세지역

11) 앞의 책, p.43

제2절 경관계획

1. 수립현황

경기도 지역의 경관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수립을 완료했다.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부천시, 파주시는 계획에 있다. 그 가운데 구리시와 부천시는 개정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절차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심의 계류 중인 상태이다. 수립추세를 살펴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서울시 주변의 시가화자원 우세지역과 농경지 자원 우세지역에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2010
성남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2012
고양시	고양시 기본경관계획 2011
용인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2012
안산시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2011
화성시	화성시 경관계획 2009
평택시	평택시 경관계획 2011
의정부시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2011
시흥시	SIHEUNG CITY 2010
김포시	김포시 경관계획 2011
군포시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2011
이천시	이천시 기본경관계획 2009
안성시	안성시 기본경관계획 2013
의왕시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2010
과천시	과천시 경관계획 2010
연천시	연천군 경관계획 2011
부천시	수립중
광주시	수립중
광명시	수립중
구리시	수립중
파주시	수립중

〈그림 3-9〉 경관계획 수립지역

2. 내용

1) 분석의 틀

2014년 개정된 경관법에서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과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항목을 비교하였으나 개정된 경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이 동일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15개 시·군(안성시 제외)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계획 수립지침」 중 제 5장 시·군 기본경관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표 3-3〉 경관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지침의 목적 /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법적 근거 /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경관계획의 유형	
제2장 경관계획 내용, 작성원칙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의 입안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장 도 기본경관계획	기본경관계획의 개요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성 / 경관기본계획 경관 부문별 계획 /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제7장에 수록
제5장 시군 기본경관계획	기본경관계획의 개요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제7장에 수록
제6장 특정 경관계획	개요 /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설계지침 / 실행계획	
제7장 실행계획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예산계획 수립	
제8장 도서의 작성	규격 및 작성기준 / 도면의 작성수준	
제9장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명시	

〈표 3-4〉 경관법(2014)과 경관계획 수립지침(2012)에 따른 분석항목 설정

경관법 (2014)	경관계획 수립지침 (2012)	
1. 기본방향 및 목표	개요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내용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자원조사 ·경관구조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3. 경관구조의 설정	기본구상	·기본방향 설정 ·미래상 설정 ·추진전략 설정 ·경관구조 설정
	기본계획	·경관권역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거점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계획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4. 중점관리구역 5. 경관지구, 미관지구	가이드라인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
6.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경관 계획	·경관자원 조사·분석 ·기본구상 ·수립 ·경관설계지침 ·실행계획
7. 경관사업 8. 경관협정 9.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10.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사항	실행계획	·경관관련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방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예산계획 수립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2) 시·군별 경관계획

(1) 현황조사 및 현황분석 내용의 비교

경관수립지침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관련된 지침의 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 대상, 범위, 내용, 경관구조 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의 조사대상은 관할구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지형, 산림, 하천과 같은 자연경관자원, 주요식생현황, 취락지와 같은 농산어촌경관자원,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등과 같은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등의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구분한다.

경관자원의 조사범위는 관할구역 경계 밖에 있어도 연결된 자원, 가시권에 있는 자원, 해당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며, 경관자원조사의 내용은 경관자원 유형별로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도면을 제시하며, 권역별로 작성가능하다. 조사내용은 반드시 기본구상이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경관구조의 분석은 대상지의 경관단위, 민감지역 파악 등 거시적 경관구조 분석을 시행하거나 주요조망점을 기준으로 가시지역 분석을 시행한다.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선정하고, 경관단위별 특성을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경관의식 조사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과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대상지의 기 수립된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관련계획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계획의 내용, 해당계획내용과 관련된 경관계획, 제도, 법 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표 3-5〉 시·군별 경관계획 현황조사 및 분석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수립연도	2009년	2012년	2011년	
경관 자원	조사 대상	자연경관 산림, 수변 도시경관 시가지, 가로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산림, 수변, 농업 도시경관 공원녹지, 주거지역, 상업·업무지역, 공공시설 역사·문화경관	
	조사 범위	기준년도 : 2009 목표년도 : 2020 수원시 전역 121.103km ²	기준년도 : 2010 목표년도 : 2020 성남시 전역 141.82km ²	계획기준년도 : 2011 계획목표년도 : 2020 고양시 전역 267.31km ²
	조사 내용			
경관 의식조사	수원시민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성남시민 4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경관서포터즈 설문조사 장기발전계획 설문조사	
관련계획 검토	화성관련계획 친환경관련계획 공원·녹지관련계획 도시경관관련계획 도시공간관련계획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비전 2020 경기도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성남도시관리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 2020 공원녹지종합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경기발전 5개년 계획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2020년 도시기본계획 2018년 장기발전계획 2020년 공원녹지계획	
관련법규 검토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성남시 건축 조례	-	
유사사례 검토	일본 나고야, 동경, 요코하마	-	서울, 과천, 시흥, 동경, 후쿠오카, 런던, 워싱턴	

구분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수립연도		2012년	2011년	2009년
경관 자원	조사 대상	광역경관 유형별 경관자원 산림, 수변, 도로, 농촌, 시가지, 역사문화 요소별 경관자원	광역경관 경관자원 산림녹지, 수변, 도로철도, 시가지, 대부도 해양, 역사·문화 비물적 경관자원	자연 경관자원 산림, 하천, 호수/저수지, 전,담, 생산녹지 인공 경관자원 주거·상업, 고속도로, 국도, 정류장/역, 산업단지, 여가관광지, 역사문화재
	조사 범위	기준년도 : 2010 목표년도 : 2020 용인시 전역 591.36km ²	기준년도 : 2010 목표연도 : 2020 안산시 전역 424.86km ²	기준년도 : 2009 목표연도 : 2020 화성시 전역 844.0km ²
	조사 내용			
경관 의식조사	용인시민 및 방문자 605명,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안산시민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화성시민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련계획 검토	경기도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용인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경기비전 2020 경기도 경관계획 2020 브라보 안산비전 장기발전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경관계획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동탄 U-city 계획 제부도 환경개선 및 공공디자인 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농업농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 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관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유사사례 검토	일본 에치고, 후쿠오카, 가나가와현, 싱가포르, 미국 샌안토니오, 스웨덴 하마비허스타드,	독일 림, 프랑크푸르크, 캐나다 밴쿠버	서울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일본 삿포로, 후쿠오카	

(앞의 표 계속)

구분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수립연도		2011년	2011년	2010년
경관 자원	조사 대상	보존형 경관자원 산림, 들녘, 하천, 역사 요소별 경관자원 시가지, 도시기반, 도시지표	자연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광역경관 유형별 경관자원 산림녹지, 수변, 도로철도, 시가지, 문화관광, 조망 비물적 경관자원
	조사 범위	기준년도 : 2009 목표연도 : 2020 평택시 전역 477.897km ²	기준년도 : 2009 목표연도 : 2020 의정부시 전역 81.59km ²	기준년도 : 2008 목표연도 : 2020 시흥시 전역 166.60km ²
	조사 내용	-		
경관 의식조사	평택시민 210명, 행정가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4명 인터뷰	의정부시민 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흥시민 427명,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련계획 검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도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평택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201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의정부시 각종 개발계획 의정부시 각종 지구단위계획	-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	-	
유사사례 검토	일본 에치고, 홋카이도, 고베, 구마모토, 영국 런던, 미국 샌안토니오, 스페인 빌바오, 독일 로테르담	서울시, 인천시, 시흥시, 과천시 일본 구마모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일본 하코다테, 오타루, 삿포로	

(앞의 표 계속)

구분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수립연도	2011년	2010년	2009년	
경관 자 원	조사 대상	자연경관 산림, 구릉, 하천/호소 도시경관 주거, 상업, 공원녹지 역사문화경관 도시기반시설	산림녹지경관 수변경관 도로철도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조망경관	
	조사 범위	계획기준년도 : 2009 계획목표년도 : 2020 김포시 전역 276.57km ²	계획기준년도 : 2010 계획목표년도 : 2020 군포시 전역 36.362km ² + 시계의 확장부분	기준년도 : 2009 목표년도 : 2020 이천시 전역 461.28km ²
	조사 내용			
경관 의식조사	김포시민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군포시민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천시민 779명, 전문가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련계획 검토	-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군포시 용도지역 지구제 군포시 Public Design Masterplan 대규모 개발·정비사업	경기도 경관계획 2020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 이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이천시 관광기본계획 등	
관련법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기타 관련 법률	
유사사례 검토	서울, 시흥, 수원, 싱가포르, 시애틀, 밴쿠버, 일본 야나가와, 미시마	-	-	

(앞의 표 계속)

구분		의왕시	과천시	연천군
수립연도		2010	2009년	2011년
경관 자 원	조사 대상	인문환경 및 일반현황 자연환경 및 일반현황 산림경관자원 수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자연경관 산, 공원, 하천, 저수지 인문경관 지명, 풍수지리, 역사·문화자원, 축제 및 행사, 교통시설, 건축물	산림녹지경관 수변경관 화산지형경관 도로철도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조사 범위	기준년도 : 2008 목표년도 : 2020 의왕시 전역 54.003km ²	계획기준년도 : 2009 중기목표년도 : 2015 장기목표년도 : 2020 과천시 전역 35.853km ²	기준년도 : 2008 목표년도 : 2020 연천군 전역 695.23km ²
	조사 내용			
경관 의식조사	의왕시민 200명, 전문가 35명,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도시경관 설문조사 공공디자인 설문조사 옥외광고물 설문조사	-	
관련계획 검토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 의왕비전21 2020년 의왕시도시기본계획 202년 의왕시 공원준비 기본계획 201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왕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등	경관관리 기본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과천시 일반상업지역 경관 관리계획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 한법률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경기도 경관조례	-	
유사사례 검토	-	인천 송도, 청라, 말레이시아 푸트리야, 프랑스리옹, 파리	-	

(앞의 표 계속)

(2)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내용의 분석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관자원조사 다음 단계로는 관할 구역 전체의 거시적 경관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미래상, 추진전략과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래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생활상, 입지, 잠재력, 미래 변화반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경관계획 홍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테마, 캐치프레이즈, 비전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추진 전략의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추진단계 및 장단기별 세부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지침에 의한 경관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일 경우나, 관할 구역이 넓어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정한다. 경관축은 대상지에 분포하는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산림이나 수계, 녹지, 시가지, 도로, 가로에 대해 설정하거나 우수한 경관특성을 지닌 지역 중에 선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 혹은 우수한 경관으로의 조망이 우수한 곳에 설정한다. 경관거점은 경관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적인 요소, 즉 기념탑, 청사, 광장, 교량과 같은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곳에 설정하는데, 이러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은 상호 중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관계획의 다른 도시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들과 다른 특성이다. 다만 경관축을 설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너무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항목에서 녹지나 산림의 스카이라인, 도로나 가로축을 대상으로 가로경관축, 해안이나 강을 대상으로 하는 수변경관축, 그리고 관리보전을 위한 경관축 등 다양한 항목을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축 설정의 남발로 인하여 경관계획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 3-6〉 시·군별 경관계획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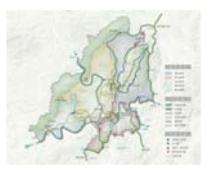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기본방향			고향이 되는 햇살도시 고양	
미래상				
추진전략				
경관 구조	경관 권역	자연생태권역 역사문화권역 기성시가지권역 신시가지권역	관교권역 분당권역 수정·중원권역	서남권역, 남동권역, 중 앙권역, 북동권역
	경관 축	역사문화 경관축 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도로 및 철도 경관축	H형 광역녹지 경관축 탄천중심 경관축 도시 및 특화 경관축	산림 경관축 수변 경관축 가로 경관축
	경관 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자연 경관거점 공공시설 경관거점 진입 경관거점 조망 경관거점	특화 경관거점 권역중심 경관거점 문화녹지 경관거점 진입상징 경관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진입 경관거점
	조망 경관	-	-	거시적 조망경관 미시적 조망경관
	중점 관리 구역	-	-	-
기본구상 중합도			-	

구분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기본방향	자연 가까이 美來 환경이 있는 도시 보전 생활 가까이 美來 터전이 있는 도시 관리 바다 가까이 美來 비전이 있는 도시 창조	미래가 풍요로운 행정중심도시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첨단도시		
미래상				
추진전략				
경관구조	경관권역	가능권역 중앙권역 호원장암권역 금오권역 송산북권역 송산남권역	북부정주권역 생태자연권역 중심정주권역 해안문화권역	
	경관축	산림경관축 해양경관축 교통경관축 수변경관축	산림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가로 경관축	
	경관거점	진출입관문거점 도시지표거점 역사문화거점 관광여가거점	진입거점 부진입거점 랜드마크거점 녹지거점 수거점	자연 경관거점 문화관광 경관거점 진입·결절부 경관거점
	조망경관	A등급 조망점 8개소 B등급 조망점 8개소	산지형 조망점 시가형 조망점	조망지점 조망대상 조망관리범위
	중점관리구역	-	-	조망·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기본구상 종합도		-		

(앞의 표 계속)

구분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기본방향		FOUR Friendly Gunpo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사람감성에 알 맞은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생태도시”		
미래상		청정도시 군포 인간감성도시 군포 공공중심도시 군포 문화체험도시 군포		
추진전략				
경관 구조	경관 권역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해안문화, 전원생태	시가지권역 자연권역	역사문화권역 중심정주권역 관광문화권역 전원문화권역 남부정주권역
	경관 축	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도로 경관축	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도로 경관축	산림녹지축 도로축 철도축 수계축
	경관 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여가관광 경관거점 조망 경관거점	관문 경관거점 공원 경관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여가관광 경관거점 공공건물 경관거점 조망점 경관거점	진입거점 산림녹지거점 역사문화거점 수거점
	조망 경관	-	-	-
	중점 관리 구역	-	그린스파인, 산림C진입부, 안양천-당정천, 금정역세권 (산본역앞) 중심상업지, 대야특화발전지구, 수리 산 조망권역, 경부선철 도/지상철4호선	-
기본구상 종합도		-	-	

(앞의 표 계속)

구분	의왕시	과천시	연천군	
기본방향	풍경이 흐르는 도시 초록이 흐르는 도시		시간의 울림으로 깨어나 는 선사문화의 중심 연천	
미래상			함께 호흡하는 자연경관 만들기 살아있는 역사·문화경관 만들기 정감어린 고향마을 만들기 품격있는 경제적 경관 만들기	
추진전략			DMZ경관권 군남경관권 백학경관권 연천경관권 전곡경관권	
경관구조	경관권역	녹색예술권역 푸른중심권역 청정문화권역	중심권역 주변권역	산지녹지축, 수변축 화산지형축, 철도축 도로축
	경관축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도로 경관축 수변 경관축, 조망 경관축 녹지 경관축	수거점, 조망거점, 역사문화거점, 산림녹지거점, 진입결절거점
	경관거점	진입경관거점 수변경관거점 녹지경관거점 교차경관거점 문화경관거점 상징경관거점	산지 경관거점 녹지 경관거점 수변 경관거점 교차 경관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진입상징 경관거점	-
	조망경관	-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	도시형 중점관리구역 가로형 중점관리구역 수변형 중점관리구역	-	-
	기본구상 종합도		-	

(3) 기본계획의 분석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경관계획의 내용을 수립한다. 경관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이나 경관축, 경관거점의 작성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관서업, 경관조례,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여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경관권역계획은 첫째,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경작지, 주거지등 주민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을 보전 관리하는 내용을 담는다. 둘째, 우수한 산림경관, 경관림, 자연휴양림 등 산림경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 방향을 수립한다. 셋째,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 또한 그 특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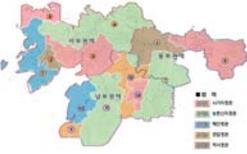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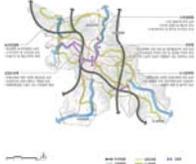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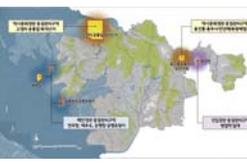
경관축계획은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조망구간 등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수립하며,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 야간경관, 주요 조망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이르는 구간에 조망축을 설정한다. 또한 상징성이 뛰어나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 주요 조망점, 수변경관축 등을 포함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계획을 수립한다.

경관거점계획은 경관단위의 진출입부, 경관특성이 뛰어난 공공시설, 건축물, 역사자원, 문화자원이나 조형물, 광장, 공원, 수목 등 랜드마크 성격이 강한 자원을 거점경관계획 수립대상으로 삼는다. 전통마을, 전통건축물, 지역의 전통문화 등이 담긴 문화경관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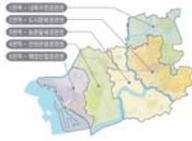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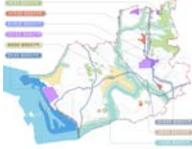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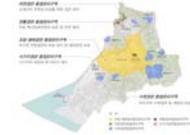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이나, 경관축, 경관거점과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관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표 3-7〉 시·군별 경관계획 기본계획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경관 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 거점 계획			
조망 경관 계획	광역조망점 역사적조망점 		
경관 중점 관리 구역 계획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	-	-
경관 기본 계획 총괄도			-

구분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경관 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 거점 계획			
조망 경관 계획	—		—
경관 중점 관리 구역 계획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	—
경관 기본 계획 총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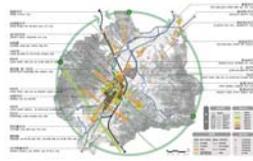
(앞의 표 계속)

구분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경관 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		
경관 거점 계획	-		
조망 경관 계획			
경관 중점 관리 구역 계획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	-	-
경관 기본 계획 총괄도			

(앞의 표 계속)

구분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경관 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 거점 계획			
조망 경관 계획	-		
경관 중점 관리 구역 계획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		
경관 기본 계획 총괄도	-		-

(앞의 표 계속)

구분	의왕시	과천시	연천군
경관 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 거점 계획		—	
조망 경관 계획	—	—	—
경관 중점 관리 구역 계획		—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	—	—
경관 기본 계획 총괄도			—

(앞의 표 계속)

(4) 가이드라인 · 특정경관계획의 분석

경관가이드라인은 유형별 경관 특성에 따른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의 경관유형에 대해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요소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지역이나 특정 경관유형,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의미한다. 특정경관계획은 경관계획의 수립과정과 동일하게 자원현황 및 경관구조, 경관의식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경관계획의 설계지침의 내용 중에 기본경관계획 수립지침과 다른 부분은 경관설계지침의 방향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는 점과,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별로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건물의 외관, 출입구, 아케이트, 광고물 등 상당히 자세한 부분의 내용까지 설계 지침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은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공공시설물을 가로등, 바닥포장, 휴지통, 안내시설물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역시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에서도 시설물의 색채, 건축물의 색채 등을 다루고 있어 공공디자인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당히 중첩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대한 부분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는 경관계획에 의한 특정경관계획으로 해석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표 3-8〉 시·군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특정경관계획의 내용

구 분	가이드라인			특정경관계획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경관지구및 미관지구의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중점 관리지역의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자원 조사·분석	기본구상 수립	경관설계 지침	실행 계획
수원시	0	-	0	-	-	-	-
성남시	0	0	0	-	-	-	-
고양시	0	0	0	-	-	-	-
용인시	0	0	0	-	-	-	-
안산시	0	0	0	-	-	-	-
화성시	0	0	0	-	-	-	-
평택시	-	-	-	0	0	0	0
의정부시	0	0	0	0	0	-	-
시흥시	0	-	-	-	-	-	-
김포시	0	0	0	0	0	0	0
군포시	0	0	0	-	-	-	-
이천시	-	-	-	-	-	-	-
의왕시	0	0	0	-	-	-	-
과천시	0	0	-	-	-	-	-
연천군	-	-	-	-	-	-	-

※ 본 내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부분은 경관설계지침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 수립시에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5) 실행계획

경관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에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제로 지역이나 지구,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관련된 사항, 경관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방안,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적용, 경관관리 실행조직, 행정체계, 단계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타 지역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피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9〉 시·군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특정경관계획의 내용

구 분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경관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계획 연계 방안	경관 사업 추진	경관 협정 적용 및 운영	경관 관련 자문 및 심의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예산 계획 수립	경관 관리 실행 조직 및 실행 체계
수원시	0	0	0	0	0	0	0	0	0
성남시	0	0	0	0	0	0	0	0	0
고양시	0	0	-	0	0	0	-	-	0
용인시	0	0	0	0	0	0	0	-	0
안산시	0	0	0	0	0	0	0	0	0
화성시	0	0	0	0	0	0	0	0	0
평택시	0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0	0	0	0	0	0	0	-	0
시흥시	0	0	0	0	0	0	0	0	0
김포시	0	0	0	0	0	0	0	0	0
군포시	0	0	0	0	0	0	0	0	0
이천시	-	0	-	0	0	0	0	-	0
의왕시	0	0	0	0	0	0	0	0	0
과천시	0	0	-	0	0	0	-	-	0
연천군	-	-	-	-	-	-	-	-	-

제3절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1. 수립현황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등의 여러 종류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역들은 주로 시가지화 우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시·군 중 자료 미공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성남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산업단지, 유기농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김포시	202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0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군포시	GUN-PO PUBLIC DESIGN MASTERPLAN 2009
양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2009
포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3

〈그림 3-10〉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지역

2.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은 작성기준이나 지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2011)」 과 「공공디자인 역할 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2010)」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배포가 되어 실제로 계획수립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 수립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계획의 수립근거가 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들은 최초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내용을 기초로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공공디자인의 필요성부터, 목적과 정의, 각 영역에 따른 목표와 세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다른 지자체의 행정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공디자인 계획의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의 구분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시각매체에 포함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1) 수원시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2010년에 수립되었다.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의 특정경관계획이 아닌 독립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주민공청회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계획의 내용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디자인안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단기, 중장기에 거쳐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을 제시하는 것이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0〉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세부가이드라인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개요 · 공공디자인 영역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현황 및 분석 · 기본구상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p>공공공간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공간, 공원, 광장, 친수공간, 기타 <p>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공공기관건축물, 의료 및 복지건축물, 학교 건축물, 문화 및 체육 건축물 <p>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물, 휴게 및 편의시설물, 관리시설물, 공사안전시설물 <p>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지역 및 시설안내 시각매체, 영상 시각매체, 기타 정보안내매체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광고물 유형별, 건축물 재질별
표준디자인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디자인 시설물 개요 · 현황분석 · 표준디자인 기본구상 · 표준디자인 개발(안) 	<p>교통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시설물계, 운송시설물계 <p>편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물계, 위생시설물계, 판매시설물계 <p>공급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시설물계, 정보시설물계, 행정시설물계
수원시 공공디자인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단계별 과정 · 향후 단계별 추진전략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검토 · 공공디자인 실행 정책제안 · 주민참여 방안 ·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 수원시 공공디자인 활용 	

(2) 성남시

성남시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 디자인 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 계획수립절차에서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국비지원사업의 결과물이어서 주요내용의 구성이 도시디자인의 비전과 전략부분에 초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디자인 비전과 전략부분에서는 다른 계획들과는 달리 주요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향과 관련부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추정예산안을 정리했다.

〈표 3-11〉 성남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범위 및 내용
개념 및 범위	도시디자인 개념 및 범위 사례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상위개념
성남시 도시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성남시 현황 도시디자인 추진 현황 및 연혁 의식조사
기본방향	도시디자인 비전 도시디자인 전략
성남시 도시디자인 추진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추진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부록	활용 및 관리방안 시민의식 설문지 주요 보고 및 회의

(3) 부천시

부천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기 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의 업무 기준에 대해서 건축기본법과 연계하여 디자인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추진단계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 는 등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민참여나 디자 인 평가지표의 도입, 평가단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표 3-12〉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개요 /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 기타
공공공간	개요 /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개요 /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야간경관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개요 /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 유지 및 관리
색채	개요 / 현황 및 분석 /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

(4) 용인시

용인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3)」 과 「통합가이드라인 (2013)」 을 수립하였다. 용인시의 경우는 표준디자인은 생략하고,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했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중점실천전략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시각매체와 옥외광 고물을 별도로 다루고, 야간경관조명을 포함시켰다.

〈표 3-13〉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3)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2013)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개요	개요 / 구성 체계	개요	개요 / 구성체계
조사 및 분석	국내·외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용인시 도시 정체성	공공공간	개요 /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	정의 및 영역 / 기본개념	공공건축물	개요 / 가이드라인
중점 실천 전략	중점실천전략의 개요 기반구축 권역특성화 통합·차별화	공공시설물	개요 /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 전략	단계별 추진계획 개요 단계별 추진방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시각매체	개요 /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개요 / 가이드라인
		야간경관조명	개요 /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활용절차 및 제안

(5) 안산시

안산시는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2011)」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경관계획의 특정경관계획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항목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그러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적용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으로 분류했다.

〈표 3-14〉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세부가이드라인
기본구상	기본방향 구상	개요 / 목표설정
	매뉴얼 활용방법	
유형별 가이드라인	유형별 경관설계지침구성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따른 경관유형 설정
	경관중점설계지침	도심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구릉지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청도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하천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연안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문화적 경관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대부도 수변경관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요소별 가이드라인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건축경관	기본방향 및 원칙 / 적용지침 /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	기본방향 및 원칙 / 적용지침 /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및 원칙 / 적용지침 / 가이드라인
	색채경관	기본방향 및 원칙 / 적용지침 / 일반가이드라인 / 권역별 색채범위 가이드
	야간경관	기본방향 및 원칙 / 적용지침 / 일반가이드라인 / 세부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검토

(6)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원도시이나 최근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산업단지들이 서로 이질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하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산업단지, 유기농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을 수립하였으며, 부록으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1)」을 수록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기타 유기농에서 디자인 접목, 강화방안으로 제품의 포장디자인과 생활용품, 지역축제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다르다.

〈표 3-15〉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남양주시 산업단지, 유기농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이해	관련법규 검토 관련조직 구성 비교 관련계획의 이해	개요 및 기본방향	개요 여건분석 및 계획방향
공공디자인 현황분석	공공디자인 분석 개요 남부 복합권역 현황 동부 복합권역 현황 북부 복합권역 현황 남부 자연권역 현황 현황분석 및 해결방안	산업단지 가이드라인	산업단지 특성분석 및 계획방향 팔야산업단지 (평원형) 진관산업단지 (공작물형) 기타산업단지 (산지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와 운영방안 기능 및 구조 기본방향 및 원칙 분야별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유기농단지 가이드라인	유기농단지의 현황분석 유기농단지의 디자인 적용방안 주요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시설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성 향상을 위한 특화시설 기타 유기농에서의 디자인 접목, 강화방안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색채 가이드라인	경관색채의 이해 색채 가이드라인의 적용 경관계획과 색채경관의 형성 색채 가이드라인		

(7) 시흥시

시흥시는 지식경제부 주관의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Eco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6〉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세부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개요 및 기본방향 공공공간 기본 컨셉	도로 수공간 공원 광장 주차장 도시구조물 주변공간 옹벽 및 방음벽 공개공지
공공건축물	개요 및 기본방향 공공건축물 기본 컨셉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치안센터, 우체국, 전화국 학교 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전시장, 구민회관, 공연장 의료기관,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배수펌프장
공공시설물	개요 및 기본방향 공공시설물 기본 컨셉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 안전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시설
공공시각매체	개요 및 기본방향 공공시각매체 기본 컨셉	도로안내, 주차안내 버스안내, 택시안내 보행자안내, 도로명판 건물번호, 공원안내 문화재안내, 관광안내 통합지주형간판, 현수막 걸이대 홍보판

(8) 김포시

김포시는 「202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0)」 과 「가이드라인(2010)」 을 수립하였다. 김포시는 ‘공공디자인 규정(2009. 8. 30시행, 김포시 예규 제202호)’을 수립하여 제도적 근거로 삼고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실행력을 갖췄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 실천계획과 로드맵, 실행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 3-17〉 김포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202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0)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개요	김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개요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가이드라인 적용예시
조사 및 분석	조사 분석의 개요 김포시 일반현황 관련법규, 제도, 정책 조사 분석 사례조사 / 현황조사	공공 공간	일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원칙 / 규정 항목 일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기본구상	기본개념 기본원칙 기본방향	공공 건축물	일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원칙 / 규정 항목 일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공디자인 단계별 실천전략	단계별 실천계획 단계별 실천과제 실천과제 로드맵	도시 구조물	일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원칙 / 규정 항목 일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기본계획 활용 및 관리방안	맞춤형 조직체계 계획 법규 및 제도개선	공공 시설물	일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원칙 / 규정 항목 일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옥외 광고물	일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원칙 / 규정 항목 일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9) 군포시

군포시는 「GUN-PO PUBLIC DESIGN MASTERPLAN」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공공디자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과는 다르게 가로시설물, 색채디자인,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역이나 지구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부문에서 시민참여 유도방안 관련 법규 등 법제도 검토사항을 첨부했다.

〈표 3-18〉 군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GUN-PO PUBLIC DESIGN MASTERPLAN(2009)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과업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범위 및 프로세스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및 목표 / 현황분석 일반지구 야간경관계획 특화지구 야간경관계획 [부록] 관련법규 검토
디자인 이슈추출	도시이미지와 개발이슈 선진사례 연구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및 목표 / 현황분석 기본구상 권역별 디자인 가이드 유형별 관리 가이드 [부록] 시민참여 유도방안 관련 법규 검토
마스터플랜 기본전략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략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가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및 목표 현황분석 기본구상 도심형 가이드라인 전원형 가이드라인	건축물 및 스카이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및 목표 / 현황분석 기본구상 디자인 가이드 관리 가이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및 목표 색채와 경관 군포시와 색채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 색채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및 실천방안	제도정비 및 활성화방안 실행 Road Map 제안 장·단기 시범사업 구상 우선사업 선정 및 실천방안

(10) 구리시

구리시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09)」, 「구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2009)」, 「구리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2009)」,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2009)」을 수립하였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정책기획단에서 직접 수립한 것으로 사업비, 추진계획 등이 실제로 예산수립 등 계획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9〉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09)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2009)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1. 도시와 공공디자인의 이해 2.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진행흐름	개요	배경과 목적 범위 비전과 도시이미지 공공디자인 실천 전략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내사례 2. 국내 공공디자인 조례분석 3. 공공디자인 현황 시사점 4. 국외사례 5.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현황 분석	1. 권역별 현황 2. 권역별 분석 3. 종합분석 - SWOT분석
기초 조사	1. 환경현황 조사 2. 시정방향 조사 3. 상위 및 유관계획 검토 4. 문화자원조사	시스템 구축	1. 조직구축 2. 제도적 개선
현황 분석	1. 도시경관 분석 2. 공공공간 분석 3. 공공시설물 분석 4. 공공이미지 분석 5. 환경색채 분석 6. 종합분석	권역별 마스터플랜	1. 기본목표 2. 기본방침 3. 권역별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 향토전원 문화권 - 역사자연 문화권 - 기존도심 문화권 - 신도심 문화권 - 구리시 전체권
기본 구상	1. 기본목표 / 2. 접근이념 3. 기본구상 / 4. 실천전략 5. 도시 이미지 구상 6. 공공디자인 실천을 위한 도시권역 구분 7. 권역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추진 로드맵	1. 단계별 추진계획 2. 예산별 추진계획
디자인 로드맵	1. 개요 / 2. 로드맵 전략개발 3. 공공디자인 로드맵 4. 효율적 추진방안	행정 사항	1. 공공디자인 행정체제 구축 2. 행정 지원체제
부록	1. 사업추진일정 2. 자문의견 검토 3.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4. 구리시 권역 구분 지도 5. 참고문헌		

(11) 의왕시

의왕시는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2011)」을 수립하였다. 의왕시의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으로써 수립되었다. 특이사항은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의 실시설계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표준디자인들이 대부분 실행하기 힘든 시뮬레이션임에 비해 발전된 유형으로 판단된다.

〈표 3-20〉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의 주요내용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2011)	
구성	주요내용
과업의 개요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적용 구분
기초조사 및 분석	기초조사 및 분석방법 관련법규 연계체계 상위계획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종합분석
디자인 기본구상 및 추진방향	방향설정 / 기본구상 / 디자인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개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8종 21타입 가로등 펜스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블라드 관광안내표지판 홍보게시판 맨홀 중앙분리대 (예시) 체계도 /시뮬레이션
활용 및 관리방안	활용방안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12) 과천시

과천시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3)」을 수립하였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계획은 기존 「기본경관계획(2010)」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2011)」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공공디자인 부문의 실천적,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별 세부실천계획으로 권역별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재천 주변 공공디자인과 과천시 C.I.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1〉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개요	1. 계획의 개요 /2. 과업수행의 흐름 3.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조사분석	1. 조사분석 체계 2. 현황조사분석 3. 관련계획·법 검토 4. 공공디자인 의식조사 5. 공공디자인 사례조사 6. 종합분석
기본방향	1.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2. 공공디자인 목표설정 3.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실천전략	1. 기본전략 2. 공공디자인 권역설정 3. 권역별 차별화전략 4. 권역별 세부실천계획
실행계획	1. 단계별 기본목표 및 전략 2. 관리 및 운영방안
특별과업	1. 양재천 공공디자인 특별과업 2. 과천시 C.I. 활용방안
부록	1.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3. 자문회의 결과보고 4.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5. 주민설명회 결과보고 6. 설문조사지

2. 계획내용의 분석

(1) 안산시

안산시의 기타관련계획의 수립 주요내용은 표3-16과 같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색채경관계획을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환경계획에 적용 가능한 친화색 28색과 문화적 지역에 활용가능한 문화색 30종, 안산을 대표하는 상징색 6색을 제안하고 있다.

〈표 3-22〉 안산시 기타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안산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2013)		안산시 색채경관계획(2013)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개요	공공시설물의 개념 및 표준디자인 특성 과업의 개요	과업의 개요	필요성 / 목적 범위 / 과업의 프로세스
자료 조사 및 분석	안산시 일반현황 사례분석 / 분석종합	안산색 찾기	조사방법 / 관련법규 및 계획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안산시 환경조사 인접도시 색채조사 설문조사 / 조사결과 및 분석
개발 방향	디자인 기본방향 색채 및 재료계획	기본구상	계획의 체계 / 계획의 지침 친화색 28 / 문화색 30 / 상징색 6
공공 시설 표준 디자인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공공시설물 항목 항목별 가이드라인 블라드 방호울타리 조명기구 안내사인 게시판 수목보호대 플랜터 맨홀커버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특수시설물	색채경관계획	경관권역별 테마 경관권역 / 경관축 / 경관거점
		요소별 색채경관계획	공공시설물 / 도시구조물 보행자/자전거도로 / 교육시설 / 지붕 / 옥상/ 그린디자인
		소재별 색채 가이드라인	도로 벽돌 기성제품 석재 창호 기타 소재 유리 타일
활용 방안 및 사후 관리	활용방안 사후관리	색채 경관 계획 활용 및 관리방안	색채경관계획 관리방안 경관위원회 색채 심의 적용대상 색채분야 작성법 안산색 실현 방향 주민참여 연계방안
		부록	사용가능 색의 범위 색상별 권장 범위
		대부도 색채가로정비 특화시범사업	개요 / 조사 및 분석 Concep / 본구상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정비계획 야간경관 조명계획 특화 시뮬레이션

(2) 안양시

안양시의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도성사업」의 기본구상 지침에의거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과 지침을 정립하고 주요시설물 8가지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디자인은 시방서가 포함되어 작성되었으며, 디자인은 시물레이션으로 제안되었다.

〈표 3-23〉 안양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안양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구성	주요내용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과정 공공시설물 영역 가이드라인 구성 및 흐름도 공공디자인 가이드 활용 절차 프로젝트 스케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지침	공공디자인 가이드 수립 필요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 정의 안양시 공공디자인 주제 / 공공시설물 디자인 주제 안양시 공공디자인 전략 / 공공디자인 로드맵 4단계 안양시 공공디자인 비전 공공시설물 디자인 7대 컨셉 공공시설물 디자인 8대 핵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14항 공공시설물 디자인 영역별 가이드라인
주요공공시설물 디자인	아이템별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7대 컨셉 반영 내용 버스전류장 자전거 거치대 벤치 휴지통 펜스 음수대 블라드 수목보호대 적용 이미지
시방서	

(3) 구리시

구리시는 「구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2009)」, 「공공시설물디자인(2009)」을 개발했으며, 가로등, 보행등 등 가로시설물 4종, 버스쉘터, 가로가판대 같은 편의시설물 7종, 교통신호제어기, 분전함 등 관리시설물 2종, 보도패턴, 맨홀덮개 등 보행환경디자인 3종 등 총 18종의 디자인을 권역별로 개발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환경색채를 포함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야간경관으로 구분하였다.

〈표 3-24〉 구리시 기타 관련 계획의 주요내용

구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2009)		구리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2009)	
구성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환경 색채 가이드 라인	1. 개요 2. 환경색채조사 및 분석 3.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4. 관리방안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	디자인모티브 조사 시설물디자인 기본목표 디자인 컨셉 시설물 디자인 방향 권역별 디자인 전략방향 시설물 디자인 - 가로시설물 - 편의시설물 - 관리시설물 - 보행환경디자인
공공 공간 가이드 라인	1. 개요 2. 기본방향 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4. 유지 및 관리방안		
공공 시설물 가이드 라인	1. 개요 2. 기본방향 도출 3. 기본원칙 4.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5. 유지 및 관리방안		
공공 시각 매체 가이드 라인	1. 개요 2. 기본방향 3. 기본원칙 4.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5. 유지 및 관리방안	시설물 조사	버스쉘터 자전거 거치대 파고라 벤치 볼라드 휴지통 웬스 가로등
야간 경관 가이드 라인	1. 개요 2. 기본방향 도출 3. 기본구상 4.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5. 유지 및 관리방안		

(4)과천시

과천시는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2011)」 수립하였다. 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층위(Layer)로 구분하여 바탕(Basic), 환경(Environment), 서비스(Service), 정보(Information)의 체계로 구성한 점이 다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이다. 표준 디자인은 버스승차대, 가로판매대 등 필수개발 대상 5종, 안내판, 블라드, 벤치와 같은 개발검토대상 7종 등 `12종에 대해 작성했다.

〈표 3-25〉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과업의 접근	1. 과업의 개요 / 2. 과업의 수행체계
과천의 현재	1. 과천의 공간 / 2. 시설물 현황조사
가이드라인의 구상	1. 가이드라인 방향 및 전략 2.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및 방법 3. 색채계획 4. 형태계획 5. 재료계획 6. 가이드라인 시뮬레이션 7. 가이드라인 구성
시설물 가이드라인	1. 도시기반시설물 2. 교통시설물 3. 기타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1. 표준디자인의 접근 2. 필수개발대상 5종
과업의 결과	1. 활용방안 2. 과업의 진행 3. 보고회 의견 4. 보고회 질의응답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운용실태

- 제1절 경관·공공디자인 운영조직
- 제2절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 제3절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 제4절 경관사업
- 제5절 경관협정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운용실태

제1절 경관 · 공공디자인 운영조직

1.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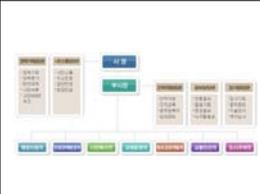
이번 장에서는 각 기초지자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조직의 현황을 조사했다. 경관계획이 실제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심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나 자문안건의 상정, 심의결과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업체의 선정, 사업추진, 공사감독 및 관리, 사후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지자체의 조직구성은 해당시기의 중점사항 및 예산규모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2013년 현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운용을 위한 각 지자체의 대응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소속부서의 특성에 따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업무분장의 경우에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2. 시·군별 현황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현재, 각 기초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시·군별 경관·공공디자인 운영조직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명칭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 경관디자인팀
책임	과장	과장	팀장
조직도			
규모	과장1명 팀장5명 담당자10명	과장1명 팀장2명 담당자8명	팀장1명 담당자2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시행정업무 ·신도시 녹지 조성 ·광물순환시스템 ·도시경관관리 ·경관위원회 운영 ·지구단위계획 협의 ·도시(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도시경관업무 ·밤밭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사업 ·경관협정 사업 발굴 ·경관개선사업 ·수원역주변경관개선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및 경관협정 사업 추진 ·수원화성 주변 경관개선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디자인정책개발 ·디자인문화행사추진 ·시 및 산하기관 디자인업무지원 ·환경색채 공공시각매체 ·시 및 산하기관 디자인관련 업무지원 ·디자인정책개발 ·옥외광고물 ·도시경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디자인 업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업무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 ·공공디자인 업무 ·디자인자문/협의 ·디자인교육 ·디자인개발

구분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명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책임	관장	과장	단장
조직도			
규모	관장1명 팀장3명 담당자8명	과장1명 팀장4명 담당자10명	단장1명 계장3명 담당자8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민원조정관리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의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도시기본계획(안) ·도시관리계획(안) ·기본경관계획수립 ·경관조례운영및관리 ·경관사업발굴및추진 ·경관협정의인가 ·경관협정운영회관리 ·특정경관계획수립 ·경관시범사업추진 ·경관위원회운영 ·경관정책업무 ·공공디자인협의자문 ·공공디자인위원회운영 ·행정디자인매뉴얼 개발및관리 ·조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개발·지원·자문에 관한 사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BI, CI)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디자인 실무협의회 ·디자인 자문단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 ·도시경관기본계획 형성 ·자치법규 관리 ·도시구조물 디자인 ·가로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행정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옥외광고물 인허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기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제도개선 ·경관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색채디자인 ·경관디자인 ·거리미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설치관리

(앞의 표 계속)

구분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명칭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경관팀
책임	팀장	팀장	팀장
조직도			
규모	팀장1명 담당자6명	팀장1명 담당자2명	팀장1명 담당자2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 개발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 협의, 자문, 기획 ·타부서 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및 자문 ·안양문화예술재단 업무겸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및 관리통제 운용·지도감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협의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업무 ·건축협의 및 타부서 협의, 민원처리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 ·교회종탑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관련 자문 및 협의 ·디자인개발 ·디자인협약 운영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앞의 표 계속)

구분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명칭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디자인정책팀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책임	과장	팀장	팀장
조직도			
규모	과장1명 팀장3명 담당자 7명	팀장1명 담당자2명	팀장1명 담당자3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디자인 자문·협의 ·경관사업추진 ·38국도 클린경관조성 ·경관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 ·광고업 등록 ·가로환경개선사업 ·특정구역 지정 ·불법광고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위원회 ·환경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 및 조례운영 ·주민참여 디자인 개발사업 운영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등 ·Eco-Design 가이드 라인 적용 관리 ·각종 개발사업 경관디자인 협의 ·디자인 관련사업 발굴 및 기획 ·디자인개발 및 커뮤니티디자인지원 ·디자인 동향과악 및 분석 ·일반건축색채협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디자인지원사업 지원 ·시흥시 표준디자인 Data 관리

(앞의 표 계속)

구분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명칭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	도시환경국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책임	팀장	팀장	과장
조직도	-		
규모	팀장1명 담당자2명	팀장1명 담당자2명	과장1명 팀장4명 담당자16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 디자인 협의 ·경관협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제정 및 지원 분야의 협의,조정 ·디자인관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리대 및 설월리 개발계획수립용역 ·광명시 경관조례 제정 ·도시 디자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건축협의 ·개발행위허가 및 단속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디자인 개선 및 시책추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교육 업무 ·각종 디자인 협의 및 지원 ·여성친화도시 관련업무 (유니버설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도시계획조례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 ·민원실 실무종합심의 처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경관사업개발·추진 ·공공디자인 표준화 ·경관관련 시범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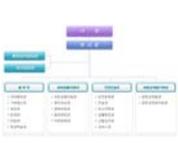
(앞의 표 계속)

구분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명칭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안전도시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	지역개발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책임	팀장	팀장	팀장
조직도			
규모	팀장1명 담당자1명	팀장1명 담당자9명	팀장1명 담당자2명
담당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운영, 조례·규칙 운영 ·간판개선 사업 추진 ·광고물 행정 업무 ·옥외광고물 인허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 ·현수막(행정)게시대 운영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광고업 등록(변경) 및 광고업자 행정처분 ·경관·디자인 업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 ·건축디자인 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관리 ·도시경관 디자인

(앞의 표 계속)

구분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명칭	도시교통국 신도시창조과 도시디자인팀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디자인팀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책임	팀장	팀장	팀장
조직도	-		
규모	팀장1명 담당자4명	팀장1명 담당자3명	팀장1명 담당자1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 종합추진계획 ·도시경관 시책업무 추진 ·건축물 디자인 협의 조정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도시디자인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환경정비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업등록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 ·공공근로 작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디자인 시범 사업 추진 ·도시경관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운영 ·경관법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 ·공공디자인 인프라구축 ·공공디자인심의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전람회, 공모전, 세미나 개최 등 ·브랜드 육성지원

(앞의 표 계속)

구분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명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과 도시미관팀	도시개발국 건축디자인과
책임	팀장	팀장	과장
조직도			
규모	팀장1명 담당자4명	팀장1명 담당자4명	과장1명 팀장4명 담당자11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사업디자인부문 검토 ·경관 조례의 제정·운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공사업 디자인부문 검토 ·경관위원회 운영 ·디자인 랜드마크 발굴 ·도시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허가, 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운영 ·에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광고물 관련 예산편성 ·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경관위원회 운영 ·옥외광고업자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등 총괄관리업무 추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옥외광고물관련 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정비 ·과태료 체납 관리 ·일반지역건축인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임대사업자등록관리 ·공동주택 관리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도시경관 정책개발 ·도시경관디자인 자문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 ·도시경관 일반 행정 관리 ·도시경관개선사업 기획 및 협의

(앞의 표 계속)

구분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명칭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미관팀	경제개발국 도시과 경관디자인팀	행복도시과 도시경관팀
책임	팀장	팀장	팀장
조직도			
규모	팀장1명 담당자2명	팀장2명 담당자4명	팀장1명 담당자7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 ·간판시범사업 ·옥외광고물 ·역세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 관련업무 ·옥외 광고물 관리 ·간판정비 ·가로등신설 및 관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공디자인 업무

(앞의 표 계속)

구분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명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미래창조 정책실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 팀
책임	팀장	팀장	군수직속기관	팀장
조직도	-	-		-
규모	6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팀장1명 담당자2명	실장1명 팀장2명 담당자4명	팀장1명 담당자2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간판정비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실과소 공공디자인 지원 ·자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과 예산 및 기금 관리 ·경관 및 옥외 광고물 법령운영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민원 업무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및 단속업무 ·불법옥외 광고물 단속 ·현수막 게시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창조도시 정책수립 ·불합리한 규제 발굴 건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개발 ·공공디자인협의 지원 ·연하리 테마 마을 조성사업 ·녹색관광정책 개발 ·북한강 및 자라섬 개발 활성화정책 등 ·산림자원 활용 신규 사업 및 정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촌조성 ·소도읍육성사업 ·경관계획 ·옥외광고물

(앞의 표 계속)

2)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1) 수원시

2009년 6월 19일 제정된 ‘수원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경관조례는 총 27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2〉 수원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경관계획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협의체의 기능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4조 회의운영 제25조 간사 등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2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시행규칙	

(2) 성남시

2012년 3월 12일 제정된 ‘성남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경관조례는 총 24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부칙으로 구성 되어있다.

성남시는 경관법 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정체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지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표 4-3〉 성남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1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3) 고양시

고양시의 경관조례는 2008년 12월 12일 제정되고, 2012년 11월 9일 개정되었으며,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경관조례’는 총 26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가치와 시민이 향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표 4-4〉 고양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5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신고서 내용) 제15조 경관협정의 공고	
경관위원회	제16조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대상 제17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19조 회의운영 제2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 간사 등 제22조 자료의 요구 등 제23조 비공개 및 비밀의 준수 제24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25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 시행규칙	

(4) 용인시

‘용인시 경관조례’는 2010년 11월 12일 제정되고 2013년 3월 6일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총 24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관사업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표 4-5〉 용인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1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시행규칙	

(5) 부천시

2011년 6월 13일 제정된 ‘부천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제27조 공사중 가림막의 미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과 분과위원회의 행위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들 수 있다.

〈표 4-6〉 부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4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5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7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임기 및 해촉 제19조 회의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1조 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2조 분과위원회 제23조 간사 및 서기 제24조 의견청취 등 제24조의2 현장조사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제27조 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등 제28조 시행규칙	

(6) 안산시

안산시의 경관조례는 2008년 8월 4일 제정, 2012년 8월 8일 개정되었다. 총 31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부칙으로 구성 되어있다.

〈표 4-7〉 안산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경관계획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경관협정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7조 경관협정ㅇ[관한 조정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2조 회의 제2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5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6조 간사서기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28조 수당 등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0조 시행일 제31조 다른 조례의 개정	

(7) 안양시

2009년 5월 27일 제정된 ‘안양시 경관조례’는 총 22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안양시 경관조례에서는 경관계획, 경관관리, 경관협정을 정의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사업의 재정지원과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중 가림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형태·디자인 및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8〉 안양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 경관 기본계획 수립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7조 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제18조 설계 및 시공 제19조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 개선 제20조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제22조 비밀 준수 등	

(8) 평택시

평택시의 경관조례는 2010년 9월 30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4일 개정되었다. 총 33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보칙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제32에서는 경관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9〉 평택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공공사업의 추진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1조 경관사업의 공모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협의체의 기능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경관협정	제16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3조 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위원의 임기 제2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제28조 회의 등 제29조 비밀준수 등 제30조 수당 등 제31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칙	제32조 지원과 계몽 제33조 시행규칙	

(9) 의정부시

2012년 3월 14일 타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의정부시 경관조례’는 총 32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 중 평가항목이 있다는 점이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다.

〈표 4-10〉 의정부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제23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제25조 회의운영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28조 회의록 제29조 비밀준수 등 제30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31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 시행규칙	

(10) 파주시

2011년 6월 17일 제정된 ‘파주시 경관조례’는 파주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경관조례는 총 35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고, 분과위원회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1〉 파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경관	제1절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2절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1조 협의체의 기능	
	제3절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의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 작성 제15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공공디자인		제16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17조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 디자인업무 지원 제20조 디자인업무 협의 제21조 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22조 디자인 검토 제23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24조 특화거리 조성 제25조 공공시설물 경관향상 제26조 기존 건축물의 경관	
경관위원회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31조 분과위원회 제32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수당 등 제34조 운영세칙 제35조 시행규칙	

(11) 광명시

2011년 8월 9일 제정된 ‘광명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시 경관조례는 총 31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12〉 광명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4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1조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신고서 내용)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2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5조 회의운영 제26조 간사 등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8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29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3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시행규칙	

(12) 김포시

2009년 7월 24일 제정된 ‘김포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경관조례는 총 21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출 서류 및 심의서류의 양식 등 별표로 자세히 담고 있다.

〈표 4-13〉 김포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경관계획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5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 경관사업계획서 제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 및 구성·운영	
경관협정	제8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신고 제12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3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1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16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17조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신청 제18조 경관위원회의의 구성 제19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준수 제20조 수당 등 제21조 시행규칙	

(13) 군포시

2011년 4월 12일 제정된 ‘군포시 경관조례’는 총 27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보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연 및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4-14〉 군포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경관위원회	제18조 경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21조 간사 및 서기 제22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23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24조 회의록 제25조 수당 및 여비	
공동위원회	제2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보칙	제27조 시행규칙	

(14) 광주시

광주시의 경관조례는 2001년 3월 21일 제정, 2013년 5월 14일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총 32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도시경관의 향상, 보칙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건축물 디자인을 경관위원회 자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5〉 광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 다른조례 등과의 관계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5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등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17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18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 회의 등 제22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3조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 등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26조 수당 등 제27조 비공개 비밀의 준수	
도시경관의 향상	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제29조 건축디자인 자문제도 제30조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 제31조 기존건축물의 경관	
보칙	제32조 시행규칙	

(15) 이천시

2011년 9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경관조례는 총 24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경관협정 관련 조항이 9조항이며, 경관협정의 지원과 조정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6〉 이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1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5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시행규칙	

(16) 양주시

‘양주시 경관조례’는 2009년 6월 22일 제정, 2013년 7월 15일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양주시의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문은 총 22개조로,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17〉 양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계획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8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0조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11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2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출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구성·운영 및 업무 제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5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내용 제17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제1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19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5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6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수당 등 제29조 비밀 준수 제30조 시행규칙	

(17) 오산시

2012년 5월 15일 제정된 ‘오산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5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18〉 오산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경관계획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2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제23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위원회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시행규칙	

(18) 안성시

2008년 12월 22일 제정된 ‘안성시 경관조례’는 총 32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등의 구성을 가지며, 경관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소위원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19〉 안성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 관련 공청회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3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4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5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6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7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4조 회의운영 제25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7조 심의 및 자문 신청 등 제28조 소위원회 제2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0조 수당 및 여비 제31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칙	제32조 시행규칙	

(19) 포천시

2010년 4월 1일 제정된 ‘포천시 경관조례’는 총 31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20〉 포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임기 제23조 회의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준용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8조 간사·서기 제29조 자료의 제출 제30조 수당 등 제31조 시행규칙	

(20) 의왕시

2009년 2월 16일 제정된 ‘의왕시 경관조례’는 시민의 개성과 매력을 간직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32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보칙으로 구성 되어있다.

〈표 4-21〉 의왕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경관계획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3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4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5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6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7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19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심의대상) 제22조 자문대상)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제25조 회의 등) 제26조 자료제출 등) 제27조 비밀준수 등) 제28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29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보칙	제31조 경관상의 시상) 제32조 시행규칙)	

(21) 여주시

2013년 9월 23일 제정된 ‘여주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31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22〉 여주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2조 임기 및 해촉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4조 회의 운영 제25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6조 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7조 간사·서기 제28조 자료의 제출 제29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3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시행규칙	

(22) 양평군

2011년 10월 21일 제정된 ‘양평군 경관조례’는 총 30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 되어있다.

〈표 4-23〉 양평군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과 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19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1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2조 임기 제23조 회의 제24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5조 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6조 간사·서기 제27조 자료제출 등 제2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수당 등 제30조 시행규칙	

(23) 과천시

2008년 12월 26일 제정된 ‘과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관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과천시의 경관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도시 정체성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조문은 총 25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로 구성된다.

〈표 4-24〉 과천시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 표창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3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신고서 내용)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제20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21조 위원회 기능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24조 수당 및 여비 제25조 규칙	

(24) 연천군

2010년 5월 10일 제정된 ‘연천군 경관조례’는 총 30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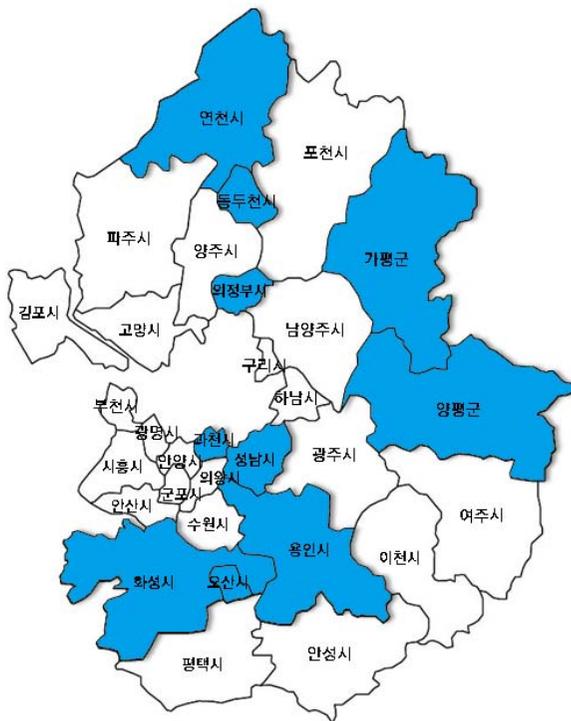
〈표 4-25〉 연천군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 용어의 정의	
경관계획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1조 구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회의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경관협정	제16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8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제19조 경관협정 승계자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제22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23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위원회	제24조 경관위원회 제25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28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제29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 시행규칙	

2. 공공디자인 조례

1) 수립현황

공공디자인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수립하였고, 동두천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는 시행규칙까지 수립하였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기본적인 구성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성남시	2012. 3. 12
용인시	2013. 1. 1
화성시	2012. 11. 15
의정부시	2012. 3. 14
오산시	2013. 5. 27
양평군	2013. 2. 6
동두천시	2011. 1. 18.
과천시	2011. 7. 12
가평군	2013. 7. 10
연천군	2013. 1. 10

〈그림 4-2〉 공공디자인 조례 수립지역

2) 공공디자인조례의 주요내용

(1) 성남시

‘성남시 공공디자인조례’는 2011년 1월 11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2일 개정되었으며,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며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조문은 총 21개조로, 총칙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위원회, 보칙으로 구성된다.

〈표 4-26〉 성남시 공공디자인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제4조의2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범위 제4조의3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제5조 디자인 진흥사업 등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8조 디자인의 검토 제9조 디자인 협의시기 제10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1조 디자인관련 시설의 설치 제12조 디자인 기초조사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등 제17조 소위원회 제18조 협조요청 제19조 수당	
보칙	제20조 운영세칙 제21조 시행규칙	

(2) 용인시

‘용인시 공공디자인조례’는 2010년 4월 29일 제정,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1개조로 구성되며,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위원회,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조례’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창의성·예술성·절제의 미 추구,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의 확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으로 삼고 있다.

〈표 4-27〉 용인시 공공디자인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5조 디자인 진흥사업 등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8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9조 디자인의 검토 제10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1조 협의결과 조치 등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등 제16조 소위원회 제17조 협조요청 제18조 수당	
보칙	제19조 운영세칙 제20조 시행규칙	

(3) 화성시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는 2012년 2월 16일 제정, 2012년 11월 15일 개정되었으며, 화성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0개조로 구성되며,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표 4-28〉 화성시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8조 디자인 업무지원 제9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10조 디자인의 검토 제11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2조 협의결과 조치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등 제17조 소위원회 제18조 수당 제19조 운영세칙 제20조 시행규칙	

(4)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는 2012년 3월 14일 제정, 2013년 9월 27일 개정되었으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0개조로 구성되며,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안정성, 기능성, 창의성, 예술성, 절제미 추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속가능성, 자연환경과의 조화, 소통과 통합디자인의 적용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표 4-29〉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 디자인 업무지원 제8조 업무 협의등 제9조 시범사업 지정 및 협력 제10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협조요청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 소위원회 제18조 수당 등 제19조 운영세칙 제20조 시행규칙	

(5) 오산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2009년 12월 28일 제정, 2013년 5월 27일 개정되었으며, 오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18개조로 구성되며, 사용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를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표 4-30〉 오산시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4조의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6조의2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7조 공공디자인업무 검토 및 결과통보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준수 제9조 디자인안의 공모 제10조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소위원회 제16조 수당 등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시행규칙	

(6) 양평군

2011년 8월 4일 제정되고 2013년 2월 6일 개정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조례’는 양평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4개조로 구성되며, 총칙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지원 및 협의,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구성된다.

〈표 4-31〉 양평군 공공디자인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시경관	제6조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제8조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권장 제9조 도시경관계획 등 자문	
옥외광고물	제10조 지원계획 제11조 지원계획의 자문	
공공디자인 지원 및 협의	제12조 디자인업무의 지원 제13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14조 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제15조 디자인의 검토 제16조 협의결과 조치 등	
양평군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회의 등 제21조 소위원회 제22조 수당 등 제23조 운영세칙 제24조 시행규칙	

(7) 동두천시

2011년 1월 18일 제정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는 동두천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2개조로 구성되며,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와 협의,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32〉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제5조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 주민의견 반영 제8조 공공디자인업무 지원 제9조 공공디자인업무의 협의 제10조 공공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제11조 공공디자인 검토 제12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3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14조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제15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소위원회 제20조 수당 등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시행규칙	

(8) 과천시

2011년 7월 12일 제정된 ‘과천시 공공디자인조례’는 과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은 총 22개조로,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디자인의 업무협의 및 검토,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4-33〉 과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6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7조 디자인 업무지원 제8조 디자인업무 협의 제9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0조 디자인의 검토 제11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회의 등 제16조 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 위원의 해촉 제19조 협조요청 제20조 수당 등 제21조 우수사례 견학 등 제22조 시행규칙	

(9) 가평군

2010년 8월 2일 제정되고, 2013년 7월 10일 개정된 ‘가평군 공공디자인조례’는 가평군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지역을 만들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총 21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조와 업무범위, 협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34〉 가평군 공공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제5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 야간경관조명설치와 권장 제7조 관계기관 협조 제8조 공공디자인업무 지원 제9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제10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11조 비용계상 제12조 가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제13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제16조 회의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 의견청취 등 제19조 수당 등 제20조 운영세칙 제21조 시행규칙	

(10) 연천군

2009년 8월 12일 제정되고 2013년 1월 10일 개정된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는 연천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문은 총 17개조로, 관계기관의 협조, 지원,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35〉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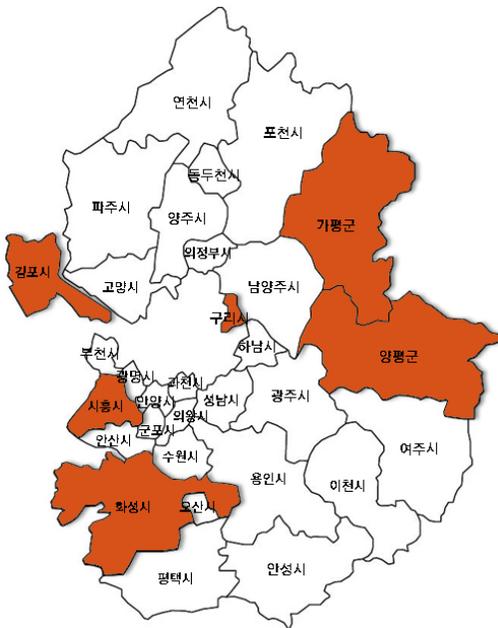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 공공디자인업무 지원 제7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8조 공공디자인업무 검토 및 결과통보 제9조 연천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소위원회 제14조 간사 등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시행규칙	

3.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유사자치법규

1) 수립현황

경관조례나 공공디자인 조례와 유사한 자치법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6개 시·군이며 총 7개의 자치법규가 있다. 산림경관과 녹지가 우수한 지역인 가평군, 김포시, 양평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구리시와 시흥시는 「경관법」을 근거로 ‘경관디자인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추가로 도시디자인,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예규인 「공공디자인 규정」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다.

〈표 4-36〉 유사 자치법규 수립지역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2.11.15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2012.8.8
김포시	자연경관보전조례 2005.12.8
	공공디자인 규정 2009.8.30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2013.7.18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2013.2.6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2013.7.10

2) 시·군별 유사자치법규의 주요내용

(1)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조례

2009년 1월 1일 제정되고 2012년 11월 15일 타법 개정으로 제정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화성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하며,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신호기, 버스 등을 말하고 있다.

〈표 4-37〉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범위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제6조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 책정 제7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제8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시행규칙	

(2) 시흥시 경관디자인조례

‘시흥시 경관디자인조례’는 2008년 5월 14일 제정, 2012년 8월 8일 타법을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시흥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질 높은 경관디자인 실현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창출로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조문의 구성은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도시미관의 개선, 경관협정 및 경관디자인사업의 지원 등,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총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4-38〉 시흥시 경관디자인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경관계획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도시미관의 개선	제7조 경관디자인 사업의 대상 등 제8조 야간 경관조명 등 설치의 권장 제9조 경관디자인 시설물의 경관향상 제10조 기존 건축물의 경관 제11조 건축물의 경관 제12조 경관디자인안의 공모	
경관협정 및 경관디자인 사업의 지원 등	제13조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제14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5조 경관디자인 사업 등의 지원 제16조 경관디자인 시상제의 운영	
경관디자인 위원회	제17조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20조 수당 등 제21조 경관디자인관련 업무절차 제22조 시행규칙	

(3) 김포시

①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1999년 3월 8일 제정되고 2005년 12월 18일 개정된 ‘김포시자연경관보전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 된 것을 말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본 조례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림과 산림축, 하천, 호수, 해안, 도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자원의 보전을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경관법에서 다루는 부분과 상당히 중첩된다.

〈표 4-39〉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9조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제11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2조 자연경관보전단체 제13조 시행규칙	

② 김포시 공공디자인 규정

김포시는 조례가 아니라 예규인 규정으로 8월 30일 ‘김포시 공공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김포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표 4-40〉 김포시 공공디자인 규정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제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 디자인 업무지원 제7조 디자인 업무의 협의 제8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9조 디자인의 검토 제10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1조 김포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제16조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제17조 수당 등 제18조 운영세칙	

(4)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2011년 12월 19일 제정되고 2013년 7월 18일 개정된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는 총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디자인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위원회 관련사항과 디자인 협의 및 결과조치 등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41〉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4조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디자인계획	제5조 경관디자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경관디자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 경관디자인계획의 내용 제8조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협의체의 기능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	제14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5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6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8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디자인위원회	제19조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20조 경관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등 제21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회의운영 제23조 소위원회 제24조 운영수당 등 제25조 운영세칙	
보칙	제26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제27조 디자인업무 지원 제28조 디자인업무 협의 등 제29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30조 시행규칙	

(5)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는 2005년 3월 14일 제정, 2013년 2월 6일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제4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실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경관기본계획, 자연경관관리계획,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한다.

〈표 4-42〉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 등 제4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제5조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제7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제8조 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 제9조 자연경관보전단체 제10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 구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회의 제15조 제척 제16조 의견청취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간사와 서기 제19조 수당 등 제20조 시행규칙	

(6) 가평군 자연환경보전조례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는 2006년 5월 4일 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인위적으로 헐거나 못쓰게 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며,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경관관리계획,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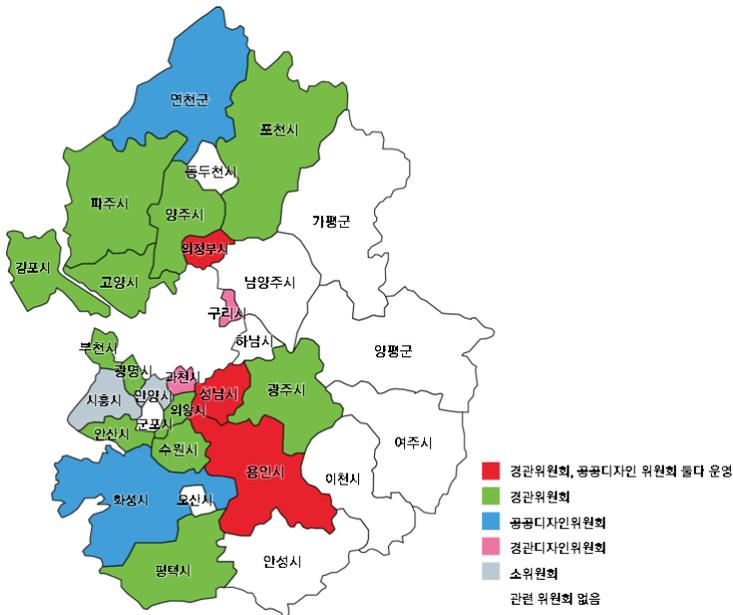
〈표 4-43〉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 등 제4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제5조 자연경관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자연경관의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7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8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제9조 자연경관보전단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14조 위원의 해촉 제15조 감사 제16조 실비 변상 제17조 시행규칙	

제3절 경관 ·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1. 운영현황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평군,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천시, 화성시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위원회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시, 구리시는 경관·디자인 위원회로 두가지의 내용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와 안양시는 경관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3〉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지역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1)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

(1) 성남시

〈표 4-44〉 성남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구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명칭	경관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인원	10명~20명	30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의원 2명 · 관계공무원 · 디자인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 정책제안 ·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 심의 및 자문 ·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건의 ·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우수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심의 ·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	-

(2) 용인시

용인시는 2010년에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두 위원회의 운영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두고 있는 것과 위원회 위원수 관련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표 4-45〉 용인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구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명칭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인원	10명~20명	30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공무원 · 시의회 의원 · 디자인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건의 ·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각종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비고	-	-

(3)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09년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2010년 3월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 선정 등의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규모가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6〉 의정부시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구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명칭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인원	10명~20명	25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디자인 관련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시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별표의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하여 각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 하는 사항 	
비고	-	-

2)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근거법과 심의대상, 자문대상이 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설치·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7〉 경관위원회 운영

구분	수원시	고양시
명칭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인원	10명~20명	10명~20명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소속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 영 제1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상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 [별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추진하는 국토와 도시 및 공원 등 토지관련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수립의 경우 · 자문결과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고		사이버자문단

구분	안산시	부천시
명칭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인원	10명~20명	10명~20명
위원장	부시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폭 30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로 바닥면적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디자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경관사업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결정사항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변경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 다만,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이용하는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도시시설물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비고	-	-

(앞의 표 계속)

구분	평택시	파주시
명칭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인원	10명~20명	50명이하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의 도시 시설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구조물 · 별표 2의 공공 시설물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물, 공간시설물,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공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자문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 경관 관련 시상자(물) 선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단,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비고		

(앞의 표 계속)

구분	광명시	김포시
명칭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인원	10명~20명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소속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경관계획 수립·변경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 · 영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 [별표]의 건축물, 도시구조물관련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비고	-	-

(앞의 표 계속)

구분	광주시	양주시
명칭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인원	20명 이내	-
위원장	부시장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경관업무 담당국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관사업 · 별표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 계획 · 양주시 경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 관련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청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추진하는 국토와 도시 및 공원 등 토지관련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수립의 경우 · 제1항에 의한 자문결과 심의를 받도록 결정되었을 경우 · 경관사업의 지원, 경관협정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 경관 상세계획 수립 및 정비 · 경관 시범사업 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관 형성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5조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비고	디자인 자문단 옥외광고물위원회	미술장식심의 위원회

(앞의 표 계속)

구분	포천시	의왕시
명칭	경관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인원	10명~20명	10명~20명
위원장	부시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 대규모 구조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결정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공공성 디자인의 경우 개별법 및 자체심의 등을 거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자체심의 시 경관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부속건축물에 한함)의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결정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자문 시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관 ·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비고		

(앞의 표 계속)

3) 공공디자인위원회

화성시와 연천군은 경관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부시장과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각종 공모전의 심사업무까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48〉 화성시·연천군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구분	화성시	연천군
명칭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인원	20명 이내	20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부군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공무원 · 시의회 의원 · 디자인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과장 ·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디자인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 및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종 공모전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비고		

4) 경관·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

(1) 구리시

구리시는 경관디자인 조례에 의한 경관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을 살펴보면 그 기능을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융합한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9〉 구리시 경관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명칭	경관디자인위원회
근거	경관조례
인원	20명 내외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시의회 위원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 · 심의 대상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에 관한 사항 1.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전시·홍보시설, 환경시설 2. 도시구조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 3.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친수공간시설, 휴게시설, 지하철 시설 4. 공공예술 공공미술, 조형물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비고	-

(2) 과천시

과천시는 구리시와는 달리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각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0〉 과천시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명칭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근거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인원	10명~20명	13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부시장
부위원장	주관부서의 부서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위원 ·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공무원 사업관련 부서장 · 디자인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디자인 개발사업의 대상 선정·건의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 [별표]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2. 도시구조물 3.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	-

5) 경관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

〈표 4-51〉 시흥시·안양시 경관소위원회 운영

구분	안양시	시흥시
명칭	경관소위원회	경관소위원회
인원	-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위원 자격	-	-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 수립·변경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 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각 개별법에 의한 단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디자인안의 공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6) 소결

위원회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각 기초지자체 별 위원회의 규모, 운영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원장 직급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상, 혹은 파급력 등을 짐작할 수 있다. 고양시, 광주시, 안산시, 파주시, 포천시의 경관위원회, 과천시와 경관디자인위원회, 성남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위원회보다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시흥시와 안양시는 각각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의 형태, 안양시 건축위원회 내의 경관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 성격, 역할이나 위치 등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원회 위원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경관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에서 위원회의 규모를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10~2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25~3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 다만 파주시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명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넷째, 자문 등의 기능 수행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자문단, 광주시의 디자인 자문단과 같은 제도를 통해 디자인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전협의의 운용실태

사전협의는 두 가지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부에서 상호 협조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계획이 경관계획이나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심의 규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사후 심의조치결과가 준수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협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 조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초지자체는 8개 시·군이었다. 이와 관련된 항목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다만 참고 사항으로 기록했다.

〈표 4-52〉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및 심의 현황

구분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심의 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원시	-	9	8	9	16	-	9	8	9	16	경관위원회
고양시	-	-	23	158	85	-	-	-	-	-	경관위원회
용인시	-	-	-	-	-	-	1	4	4	14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안산시	-	-	-	-	-	-	29	43	89	50	경관위원회
안양시	14	45	81	45	20	-	23	26	9	10	경관소위원회
남양주시	-	-	4800	4800	4800	-	-	-	-	-	-
구리시	-	-	12	32	20	-	-	-	6	9	경관디자인위원회
과천시	159	155	177	156	179	3	-	-	1	2	경관·공공디자인 위원회

고양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전검토요청과 사이버 자문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많지 않지만, 담당공무원의 협의 건수는 연간 15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구리시와 안양시도 심의 건수보다 많은 협의 건수를 보이며,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심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에 400건 이상의 협의를 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 사항들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안산시와 용인시는 협의 보다는 심의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심의 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디자인의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개정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각 단계별 사전 협의 및 심의, 자문 절차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추후 경관행정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제4절 경관사업

1. 정의

경관사업은 경관법 수립 이전, 각 지자체 별로 추진하던 각종 경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 절차나 기준도 없이 줄속으로 추진되어 기존의 경관을 해치거나, 지자체 장의 개인 취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그 내용을 정의하고, 사업의 추진, 지원, 심의 및 자문 등의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관사업의 법적인 정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¹²⁾으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의하여 필요한 경관사업의 종류를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은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경관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농산어촌 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경관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사업유형들과 상당히 내용적으로 중복된다.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경관사업의 고유 특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공공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각종 사업들이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12) 경관법 제16조

2. 관련법과 제도

1) 경관법

경관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각각 경관사업의 유형, 시행자, 경관사업추진체, 경관사업 재정지원, 경관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경관법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경관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장의 승인 하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경관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측 된다¹³⁾.

〈표 4-53〉 경관법의 경관사업

	<p>경관사업의 유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p>경관법 제16조</p>	<p>경관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 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안 제8조 2항

<p>경관법 제17조</p>	<p>경관사업추진체에 관한 사항</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관법 제18조</p>	<p>경관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hr/> <p>경관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개정 경관법 시행령 제8조 (2014. 2. 7. 시행예 정)</p>	<p>경관사업 시행의 승인</p> <p>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에게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사업의 대상에 국도, 국가하천, 국립공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경관사업의 대상에 지방도, 도시공원, 지방하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경관사업의 대상에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할 기관의 장 4.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의 표 계속)

2) 경관계획수립 지침 내의 경관사업 부문

(1) 경관사업 선정

경관계획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사업은 관할구역 내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경관위해요소의 정비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경관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경관림 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 등 경관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사업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관사업 추진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경관사업의 선정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예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시행의지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추진과정에서 경관(회복)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반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실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경관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업주체다. 해당지역의 참여 가능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성이다.

지침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관사업 추진 단계별·주체별로 제시하고, 필요시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경관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간의 협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지침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상은 관련법이 부재하고 일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공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의미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표준디자인 시설물 등을 들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지침에서는 공공공간과 공간환경을 디자인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언급하고 있는 적용 가능한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로특화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보행공간 디자인사업
- 담장허물기 사업, 마을만들기 등 생활공간 디자인사업
- 공원/광장 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

이렇듯 공공디자인사업은 경관사업의 대상과 많은 부분이 공유, 중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3. 현황

협조가능한 시·군 중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6개 시·군이었으며, 그 중 5개 시·군의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지역에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이 대부분 2010년경 전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추진된 경관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수입 감소로 인하여 각 지자체 별 예산구조가 변화했으며, 그 결과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의 경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에 따른 사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의 경관사업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 추진하되 경관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2013년의 경우에는 「생태교통 2013」 추진에 의해 화성 내부 행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경관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3년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표 4-54〉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사업현황

구분	경관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원시	0	0	2	1	9	0	0	0	0	0	각 부서에서 진행하여 총괄이 어려움
용인시	0	0	1	0	0	0	0	0	0	0	
안산시	0	0	1	1	0	0	0	0	0	0	
안양시	0	0	0	1	1	3	2	1	1	2	
남양주시	2	2	0	0	0	0	1	0	0	0	
구리시	0	0	0	1	1	0	0	0	0	0	

제5절 경관협정

1. 정의

경관협정은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개념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경관협정은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¹⁴⁾이다.

경관협정은 해당 대상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며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인 관리를 실현하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주민조직을 활용하거나, 주민간의 친숙함과 신뢰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관협정은 경관협정체결자의 전원합의로 건축물의 외관, 간판, 설비 및 외부공간과 토지, 녹지, 가로, 수변, 야간조명, 수목, 공개공지,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로수나 하천길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도 협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협정의 체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체결 후에는 주민들로 운영회를 조직하고 자치단체의 보조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되, 협정과는 별도로 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여러 번 받아야 하며, 경관협정 체결 후에도 이를 반복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경관협정 사례가 드문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14) 국토해양부(2010), 경관협정 수립매뉴얼, p.4

2. 관련법 및 제도

경관협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5〉 경관법 상의 경관협정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1인협정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양식	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중 대통령령 규정사항
	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중 대통령령 규정사항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 설립조건과 위원구성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신고→시·도지사	제11조 ·경관협정 운영회의의 설립 신고기한 ·설립신고서의 내용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열람 심의 : 시군경관위원회 인가 : 시·도지사 인가내용의 열람 : 시·도지사	제12조 ·경관협정의 공고 및 열람 공고방법, 열람장소
제22조 제23조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변경 : 제 19,20조를 준용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폐지 : 협정체결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시·도지사 인가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경관협정 체결자의 경관협정 준수 의무 경관협정의 승계 → 대통령령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 중 대통령령 규정사항 승계조건, 신고기한 등
제25조 ·경관협정의 지원 경관협정 승인에 따른 기술·재정적 지원 비용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제14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의 내용
제3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협정의 인가	제17조 ·경관위원회의의 심의대상 중 대통령령 규정사항

3. 운용실태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관협정을 맺은 사례는 4개시, 모두 4건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의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건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광주시는 중대물빛공원 주변 상인회와 경관협정을 맺고 ‘중대물빛공원 간판개선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여 건물외관 및 업소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부착했다. 기존의 간판개선사업과는 달리 상인들은 일부 자부담으로 간판을 교체하고, 상인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안양시는 안양기독교 연합회와 경관협정을 통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교회의 첨탑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벽면에 설치하거나 3.5m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여 약 100여개의 첨탑을 교체했다. 동시에 밤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소등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용인시는 '경전철 주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전철 노선 200m 이내에 위치한 5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옥상을 녹색하늘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경관협정을 맺었다.

수원시는 거북시장 상인회와 경관협정을 맺고 ‘거북시장 느낌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상인들 스스로 간판정비와 거리정화 등 환경정비를 하고, 소식지 발간, 지역축제를 열고 있으며, 시와 협조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공중화장실과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옛 영화역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시·군별 경관협정 현황

구·군별	구분	경관협정	경관협정					협정대상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원시		1	0	0	1	0	0	거북시장 상인회
용인시		1	0	0	1	0	0	경전철 주변 옥상녹화
안양시		1	0	0	0	1	0	안양기독교연합회
광주시		1	0	0	0	0	1	중대물빛공원 주변 상인회

제5장

운영실태 비교 및 분석

제1절 경관행정 운용 일반사항

제2절 지자체별 운영실태 비교

제3절 소결

제5장 운영실태 분석 및 비교

제1절 경관행정 운용 일반사항

1)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행정의 연계

경기도의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경관계획의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수립완료하거나 심의절차 중에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경관업무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을 지침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광역지자체 기준에서 작성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황조사의 항목들은 관련 법규 검토 항목 외에는 모두 기준항목을 채워서 작성했으나 기본구상의 경우에는 조망경관, 중점관리구역 부분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관계획 항목에서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12곳이었으며, 조망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6곳이었다.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의 경우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관계획에서 제안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구지정 권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있고, 해당 지역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관축이나 경관거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관련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하는 내용에 관련 사항, 경관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방안, 경관사업, 경관협정 적용 및 운영, 경관관련 자문, 심의, 단계별 추진계획, 예산계획, 경관관리실행조직 및

실행체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경관행정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경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각종 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운영과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운용을 규정하는 기준이 바로 경관조례의 기능이다. 즉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은 조례 - 위원회 - 사업의 흐름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경관조례의 경우에는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4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조례가 아닌 공공디자인 조례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했다.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모두 16개 지자체였다.

각 기초지자체별 경관행정운영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인 이상의 실과 조직을 가진 곳은 8개 지역(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평택, 김포, 의왕)이었으며, 광주시의 경우에는 직제는 팀으로 되어 있지만 규모는 10인으로 옥외광고물 업무, 건축디자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팀장 1인 담당자 2~4인 정도 규모의 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평균의 경우에는 군수직속 조직으로 2팀 1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운용

각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등 이 16개 지역에서 수립되었으며 주로 시가지화가 우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공공이 유지 관리하는 각종 항목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획으로는 공공디자인 분야 전체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천, 구리, 안산, 안양 등 4곳)과 표준디자인을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색채경관계획을 수립한 경우(안산)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색채경관을 다루는 경우가 적는데 이는 색채계획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어

렵고, 적용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색채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등은 기본 개념이나 영역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구성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의 내용 중 ‘권역설정’ 및 ‘권역별 세부실천계획’을 기술하기도 하며, 경관계획에서도 경관권역별 가이드라인 등 지역별 가이드라인에서, 건축, 가로공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조명계획 등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록하고 있어서 공공디자인 계획의 공공건축,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행정조직 구성에서도 많이 드러난다. 경관업무나 공공디자인 업무를 다루는 조직은 도시디자인, 디자인정책, 경관디자인인 경우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인 경우보다 훨씬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례제정과 위원회의 운영

경기도의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게 해당 조례를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다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조례는 구리, 하남 등 6개의 시·군을 제외한 24개의 시·군에서 수립한 것을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에는 10개의 시·군에서 수립했으며 그 가운데 동두천시, 화성시, 가평군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만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다.

가평군과 양평군, 김포시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있으며, 그에 의해 자연경관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각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경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시·군에서 이러한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에는 경관제도에
서 제시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 20명 이내로 그 구성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정된 공
공디자인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디자인업무지원이나 사업의 구
성, 디자인 협의,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경관법에
서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게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
를 위임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항은 각 시·군의 경관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잘 나타나는 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항목들을 보면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운영방안 및 수당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 소위원회 구성 : 고양, 광주, 부천 (3)
- 수당지급 등 운영 :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포천(19)

조례의 제정과 위원회 설치 운영은 행정의 기초 시스템으로서 계획에서 제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
는 기능을 담고 있다.

4)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이러한 일련의 경관행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
로 협의제도의 운영이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디자인을 직접 조절하거나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
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전협의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전

문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같이 디자인 관련 협의 건수가 매달 400여건에 달하는 등 협의를 통해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 고양시, 과천시도 사전협의 건수가 100건을 넘는 등 경관과 디자인 관련 행정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는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연간 10~90건에 이르는 등 관련 심의가 상당히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5)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추진

경관사업의 규모는 응답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된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며, 타부서에서 추진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심도 깊게 다뤄지지 못했다. 또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수립지역에서 추진되어야만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2013 생태교통을 계기로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사업이 추진되어 그 결과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본 조사에서 경기도 지역의 경관협정을 맺은 지역이 4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협정수립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지자체 별 운용실태 비교

1) 도시의 규모

(1) 인구 100만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광역시 기준인 인구 100만을 이미 넘은 수원시 외에도 성남, 고양, 용인, 부천시도 100만에 육박하는 광역규모의 기초지자체이다.

수원, 성남, 용인의 경우에는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모두 수립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과 용인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경관계획은 심의계류 중에 있으며,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 용인, 고양은 위원회 심의절차를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이와 관련된 성남시의 자료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2) 인구 50만

인구 50만 규모인 경우에는 대도시에 속한다. 해당 규모의 기초지자체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중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안산과 화성으로 각각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3) 인구 10만 이상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로는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등 16개 지역으로 하남시를 제외하고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관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4) 인구 10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과천의 경우에는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경관조례, 공공디자인조례를 모두 수립하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두천시와 가평군, 연천군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그 중에서 연천군에서만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지역특성의 반영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행정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초지자체들이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활용하고, 그 속에 주어진 행정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특색있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관관련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수원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관조례를 설치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수립하는 등 경관행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 추진 과정에서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외에도 시설물 표준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는 2013 생태교통을 추진하면서 2013년 경관사업을 8개를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거북시장느림보타운 경고나협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추진이 수원시 경관행정의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특정경관계획으로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외에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색채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안산시는 기본적으로 경관법의 시스템을 반영하면서 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발체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안산시의 환경이 공단과 매립지 등이 있어 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색채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도 색채가로 정비 특화시범사업’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의 디자인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디자인 협의에 의한 디자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디자인 협의 건수가 4,800건에 이르는 등 담당 공무원의 디자인 실무 협의에 의한 행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구리시의 경우에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모두 2009년도에 수립했다. 그 중에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추진전략, 사업비, 추진계획 등 행정수요에 의해 직접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표준디자인의 실시설계를 추진한 부분이 매우 독특하다. 기존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디자인들은 디자인 업체에서 작성한 도면으로 실제 제작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단순 시뮬레이션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작단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의왕시의 표준디자인은 그러한 기존 형식에서 발전한 형식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소결

경관계획이 행정적으로 집행력이 있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5년이 넘는 지점에서 대대적으로 수정된 개정 경관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가까워진 현재에 이르러서는 경관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방향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들이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서로 동상이몽은 아닌가에 대한 점검과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경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기초연구단계로써, 경기도 지역의 기초지자체들의 경관행정 운용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이 기초지자체에서 의무화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 설치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즉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초 시스템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도의 설치 및 운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경관위원회의 심의기능 자체의 작동성과 연관이 있다.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성숙해질수록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의 상호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그 상황에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실제로는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관, 디자인의 문제, 그 가치판단의 체계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분야의 계획, 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획의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다.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는 두 분야를 같이 취급하는 현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디자인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경관위원회 보다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적인 정의나 역할구분 보다는 행정적인 편의에 의하여 경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그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정으로 보인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우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기도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크고, 밀도도 높으며, 시가지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지역의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 경관협정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다. 현행법에 의한 경관사업은 경관계획 수립지역의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경관사업의 추진정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다. 경관법 제정 이전에 추진되던 각종 경관관련 사업행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주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환경개선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표 5-1〉 경관관련 행정운용실태 비교

구분 구·군별	계획			운 용 실 태						
	경관계획	공공 디자인 가이드 라인	기타	조직 구성	경관조례	공공 디자인 조례	유사 조례	위원회	경관 사업	경관 협정
수원시	●	●		과(16)	●			경관	●	●
성남시	●	●		과(11)	●	●		경관/공공		
고양시	●			팀(3)	●			경관		
용인시	●	●		과(12)	●	●		경관/공공	●	●
부천시	○	●		과(15)	●			경관		
안산시	●	●	표준디자인 색채디자인	단(12)	●			경관	●	
안양시			공공시설물	팀(7)	●			소위원회	●	●
남양주시		●		팀(3)					●	
화성시	●			팀(3)		●	●	공공		
평택시	●			과(10)	●			경관		
의정부시	●	●		팀(3)	●	●		경관/공공		
시흥시	●	●		팀(4)			●	소위원회		
파주시	○			팀(3)	●					
광명시	○			팀(3)	●			경관		
김포시	●	●		과(21)	●		●	경관		
군포시	●	●		팀(2)	●					
광주시	○			팀(10)	●			경관		●
이천시	●			팀(3)	●					
양주시		●		팀(5)	●			경관		
오산시				팀(4)	●	●				
구리시	○	●	공공시설물	팀(2)			●	공동	●	
안성시	●			팀(5)	●					
포천시		●		팀(5)	●			경관		
의왕시	●	●		과(16)	●			경관		
하남시				팀(3)						
여주시				팀(6)	●					
양평군				팀(8)	●	●	●			
동두천시				팀(3)		●				
과천시	●	●	공공시설물	팀(3)	●	●		공동		
가평군				실(7)		●	●			
연천군	●			팀(3)	●	●		공공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이러한 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업들이 법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인식에서 비롯했다. 기존의 지자체가 수립한 경관계획들에 대해서 백화점식 계획, 지침에 의한 천편일률적 계획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수립된 계획 내용을 어떻게 운용하고, 유지·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또한 민선6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차원에서 지역 스스로 국토의 경관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기존의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분야의 연구들도 차츰 지방행정의 실행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경관법에 의해 인구10만이상의 기초지자체에서 수립의 무화 된 경관계획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중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설치,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과 각 지자체별 고시내용, 행정정보 제공내용 및 인

터넷 자료실 검색 등을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했으며, 전화 및 직접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31개의 시·군에서 16곳에서 경관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관행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크고,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관계획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하여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지자체는 10곳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위법이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필요하여 설립한 것인 만큼 위원회의 운영이나 사전협의제도 등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관기본구상 및 권역별 계획 수립, 경관축, 조망권 설정 등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매우 어렵다. 경관축이나 조망권 설정이 필요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개정 경관법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항,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의 규정을 담고 있어 이러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상당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심의 대상은 광역 및 중앙에서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경관계획 시스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심의사전과정에서 사전협의제 운영사항이나 경관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직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경관조례가 수립시기가 대체로 2009년에서 2012년이었기 때문에 조례 수립이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의 기간이 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기존 경관법은 규제법률이 아니라 권장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심의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개정 경관법이 시행되는 2014

년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점검하기 위해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현황을 조사했으나 응답기관이 적어 실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으며, 실행 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관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경관계획 등 행정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아직 기초지자체 수준에 적합한 모델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의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체결 및 경관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관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운영 및 사전협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연간 4,800여건에 이르는 사전 디자인협의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집중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포시의 경우처럼 조례 하위개념으로 규정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흥이나 안양과 같이 경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심의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정 경관법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타 지자체의 자료를 심도 깊게 조사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수준의 경관계획의 수립내용과 경관행정의 운용실태를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을 중앙부처의 정책수립 과정에 건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향후과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경관행정의 운용실태를 조사하며, 이를 기초로 기초지자체의 경관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기초지자체의 경관행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경관사업, 경관협정의 경관법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다.

우선 기초지자체의 행정사무의 영역과 경관계획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개정 경관법이 타 법률과의 위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만큼 사업별 심의 사항 및 자문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위원회 역할을 심의 보다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경관계획 수립지침 및 경관행정운영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관사업과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 규정되는 공공디자인 사업,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 도시재생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각종 사업들의 성격이 상당부분 서로 유사하다.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시장, 군수의 판단에 의해 심의 및 자문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선정, 추진절차, 평가방법,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각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가 가진 전문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거나, 도시계획상임계획단과 같은 전문조직의 구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보직제의 적용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등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정 경관법 환경에서는 기존의 국토해양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하고, 기초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광역급 규모의 기초지자체로서의 특수성과 더불어 기초지자체 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기초지자체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경관행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단행본

- (사)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 권영현, 이상준, 이정수(2011),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 임승빈(2008), 도시경관계획론, 집문당.
- 박상헌, 강원도형 경관모델구축, 강원발전연구원.
- 성현찬(1998) 도시경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규(2007)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성룡(2008), 경기도 경관관리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형복, 대전광역시 경관행정 역량강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추용욱(2013), 개정 경관법 그리고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 학술논문

- 권영현, 이상준, 이정수(2011),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행정조직 특성 및 구성 방향 연구 : 충청남도 디자인 조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 김희재, 오성웅, 류중석, 배웅규(2008), 경관기본계획의 구성내용별 국내사례 특성분석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 나한주(2008),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 경관 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문지원(2009) 경관법·제도에 기초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계획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 이여경(2007),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 이정수, 윤성훈, 한정(2011), 국내 특·광역시 경관,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정책 비교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이정형, 이여경(2008),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경관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임만택(2005), 공간문화에서의 공공디자인, 대한건축학회지.

주신하, 김영희(2011), 국내 경관계획 관련지침 및 계획내용 분석, 한국조경학
회지.

주신하, 김영희(2010),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현황, 한국경관학회지.

정경석, 하창현(2008),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
할, 경남발전연구원.

최성호(201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에 던진 5가지 질문, 2011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 기타자료

국토해양부(2010), 경관협정 수립매뉴얼

국토해양부(2009),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

국토해양부(2011),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연구

경기도(2012),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지표

고양시(2011) 고양시기본경관계획

과천시(2012) 과천시 경관계획
(2011)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
(2013)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리시(2009)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구리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2009) 구리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2009) 구리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군포시(2012)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김포시(2010) 김포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2011) 김포시 기본경관계획

남양주시(2011) 남양주시 산업단지, 유기농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공디자인 사업 가이드라인
부천시(201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산업자원부(2007), 지자체 디자인 행정 매뉴얼
성남시(2011)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2011) 성남시 도시디자인마스터플랜
수원시(2010)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2007) 수원시 도시경관계획
시흥시(2010)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안산시(2013) 아름다운 도시색채를 위한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2011)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2013) 안산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2011)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안양시(2008) 안양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용인시(2013)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3)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2)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의왕시(2010)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2011)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디자인
의정부시(2011)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이천시(2011) 이천시 기본경관계획
평택시(2011) 평택시 경관계획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역 공공디자인 주요사업 모음집
행정안전부(2010), 공공디자인 역할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2011),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행정안전부(2010), 행복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디자인 :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
모음집
화성시(2011) 화성시 경관계획

영문요약(Abstract)

Abstract

This study is scheduled for February 2014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by the scenery method established in municipal population of 100,000 or more is mandatory for a landscape plan to reap the effectiveness of policy development, administrative landscape of Suwon as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metropolitan areas and landscape design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e scope of the study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scenery method to target local governments since 2007, was enacted in 2013 to establish the current plans and operations officer and the public around the design progress.

Each cities and counties by public design and landscape master plan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arget area of 25 among the 16 municipalities in the region had already established Landscape Planning, Construction, set the default orientation of the basic design, basic plans, guidelines, and specific landscape planning, planning of the execution plan information for each item was compared, and the results landscape districts plan, landscape plans, and some plans axial part of the action plan items, except for the deviation of the contents of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re faithfully.

In the case of public design plans from 16 cities and counties to establish and operate public facilities mainly dealing with the design guidelines and landscape guidelines in terms of cont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a lot of overlap. Other similar public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master plans, standard design, color, and so on

landscape planning.

Conditions of landscape planning in order to identify relevant administra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rdinance, Council of installation, prior consultations, landscape projects, landscape arrangements were investigated. And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more than 10 people in nine areas. 24 areas had enacted a bylaw landscape, 10 local ordinances enacted in the public design. Municipal laws and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run by municipalities outside the 6 areas were examined, including Hwaseong. Landscape Council was established in 14 regions, the Public Design Commission was founded in 5 regions, 3 areas at the same time is an officer of the Commission and the the Design Council has been operating. Joint Committee for the landscape and design, Gwacheon, Anyang and Shiheung the subcommittee was to operate. Committee for a smooth operation made prior consultations had operations in many areas, in the case of Namyangju committee rather than to be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6 areas, including Suwon to promote the Landscape project had 4 Landscape agreements established in the region.

These findings, in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s deliberations and had been operating relatively well, the field of public design, public design features that are installed if the first is quite common. Th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operations landscape of the landscape is relatively committees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many areas, but prior agreement could be reached through the elaborate steps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the Landscape business and Landscapes agreement was analyzed at an early stage.

In this study,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landscape and design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was in progress. And methods of the study period, but due to limitations of the study as the basis for the next step to be significant.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운용실태 조사연구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952339-6-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